

201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한국수출기업의 국제팩토링  
이용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우수수

# 한국수출기업의 국제팩토링 이용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for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Uses of Korea's Export Companies

2012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우수수

# 한국수출기업의 국제팩토링 이용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성민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年 10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우수수

# 우수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정호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성민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석민 (印)

2011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 목 차 》

##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제3절 선행연구검토 .....	6
제2장 팩토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	8
제1절 팩토링의 개념과 기능 .....	8
1. 팩토링의 개념과 발달과정 .....	8
2. 팩토링의 기능 및 장·단점 .....	10
제2절 팩토링의 종류 및 거래절차 .....	17
1. 팩토링의 종류 .....	17
2. 팩토링 당사자 및 거래절차 .....	26
제3절 국제팩토링에 관한 국제협약 .....	31
1. UNIDROIT 협약의 탄생배경과 과정 .....	31
2. UNIDROIT 협약의 주요 내용과 평가 .....	33
제3장 국제팩토링의 이용현황 .....	37
제1절 국제무역 결제방식과 변화추이 .....	37
1. 무역결제방식의 종류 .....	37
2.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추이와 요인 .....	42
제2절 국제팩토링의 이용현황과 특징 .....	47
1. 국제팩토링이용현황 개괄 .....	47
2. 주요국가별 팩토링 이용현황 및 특징 .....	52

제3절 한국의 팩토링 이용현황 및 특징 .....	62
1. 한국의 팩토링 이용현황개괄 .....	62
2. 주요 은행별 팩토링 이용현황 및 특징 .....	66
<b>제4장 한국 팩토링의 문제점과 이용증대 방안</b> .....	73
<b>제1절 한국 팩토링의 문제점</b> .....	73
1.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73
2. 팩토링 운영상의 문제점 .....	79
3.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미비 .....	84
<b>제2절 한국 팩토링의 이용증대방안</b> .....	85
1. 팩토링관련 법제도의 정비 .....	86
2. 팩토링 운영상의 합리적 추진 .....	89
3.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확대 .....	93
<b>제5장 결 론</b> .....	99
<b>참고문헌</b> .....	101

## 《표목차》

<표 3-1> FCI 팩토링 이용현황 .....	48
<표 3-2> GDP규모별 FCI 팩토링 이용현황 .....	49
<표 3-3> 미국과 미주지역 팩토링 이용실적 .....	53
<표 3-4> 영국과 유럽지역 팩토링 이용실적 .....	55
<표 3-5> 독일과 유럽지역 팩토링 이용실적 .....	57
<표 3-6> 일본과 아시아지역 팩토링 이용실적 .....	59
<표 3-7> 중국의 팩토링 이용실적과 추이 .....	61
<표 3-8> 아시아 주요 국가별 팩토링 이용추이 .....	65
<표 3-9> 한국은행의 팩토링 서비스현황 비교 .....	70
<표 4-1> 연도별 수출팩토링 지원현황 .....	84

## 《그림목차》

<그림 2-1> 제휴방식에 의한 수출팩토링 거래절차 .....	27
<그림 2-2> 단독방식에 의한 수출팩토링 거래절차 .....	29
<그림 3-1> 한국의 결제형태별 수출입 현황 .....	42
<그림 3-2> FCI 팩토링제도 이용현황 추이 .....	47
<그림 3-3> 아시아 주요 국가별 팩토링 이용 실적 .....	64
<그림 3-4> 수출입은행 수출용원자재 팩토링 이용절차 .....	68



# ABSTRACT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Uses of Korea's Export Companies**

Yu Xiu Xiu

Advisor : Prof. Lee Sung-min, Ph.D.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theoretical views about the mode of international factoring transactions used with the mode of traditional letter of credit. Furthermore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factoring trades this paper will suggest a strategy to enhance these trades.

Despite being in use for 30 years, factoring is sluggish in Korea even though it is popular in advanced countries and growing more so in developing nations. In Korea, several capital companies discount, in the name of factoring, p-note based on an account receivables with recourse basis. As for international factoring, Korea Export Import Bank is the only Bank engaged in export factoring among the nation's financial institu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Korea's factoring system with regards to the legislation, managements, and biased emphasis on major companies, and also proposes a strategy for the expansion of factoring system uses based on these problems.

First, a plan for modifying Korean law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actoring companies and receivables law system is suggested as a way to enhance the factoring system uses.

Second, this paper explores ways to overcome management obstacles and create a rational management system, such as establishment of factoring financial companies via special law and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agents of credit investigation and debts collectio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methods of supporting small businesses, such as starting special financial programs, expanding non-recourse factoring, approving security right of account receivables and movables, and improving small business' awareness of factoring.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21세기는 이른바 디지털 정보화의 시대로 인터넷망이 전 지구촌을 동시 대화권으로 축소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정보일원화의 시대에 걸맞게 국제무역체제도 획기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무역 대금결제의 시기와 방법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간의 역학관계 등에 따라 통상 네 가지의 방법으로 분류된다. 즉, 물품의 공급 전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자에게 대금결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사전송금방식, 수출자가 은행을 통하여 서류를 인도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추심방식, 그리고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신용장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방식, 마지막으로 수출자가 물품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사후송금방식이 있다.<sup>1)</sup>

이중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은 지난 수십년간 국제거래에서 무역결제의 핵심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국제무역의 결제방식이 과거 신용장중심의 결제방식에서 추심방식(D/A, D/P)과 청산계정방식(Open Account)과 같은 외상의 후불조건으로 변화하면서 무역금융과 수출신용위험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의 심화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수출입기업들의 수출금융은 더욱 경색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무역금융에 대한 적절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으로서는 불확실한 담보를 기반으로 무역금융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후불송금조건의 무역금융은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상의 후불조건 결제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할 경우 수출

---

1) 한기문, “국제팩토링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1.

자는 거래 자체적으로 수입자의 신용위험 등을 회피할 수 없게 됨으로 그러한 위험들은 회피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수출자는 Open Account 방식을 포함하는 사후송금방식이나 추심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체로 대금지급이 지연되고, 또한 대금결제과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금의 부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많은 중소수출기업들은 수입업자들이 물품의 인도 후 대금을 지급의무가 있는 사후송금방식의 계약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품의 생산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들에게 수출금융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증대하게 되고, 또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그러한 리스크 회피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경영의 효율화와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일부 무역업무의 아웃소싱 등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대금결제방식으로 신용장의 이용이 줄어들고 수출자에게 무역금융이나 신용위험의 회피의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금결제방식들, 특히 Open Account를 포함하는 사후송금방식의 이용이 증대되는 환경에서 대안적 또는 보완적 대금결제방식으로서 그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방식이 국제팩토링 방식이다.

수출자는 수출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수입자에게 Open Account 방식을 포함하는 사후송금방식 등으로 물품을 공급하더라도 팩토링부터 무역금융, 즉 즉각적으로 현금을 제공받아 유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동시에 수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적 위험 등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팩토링부터 외국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와 당해 무역거래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입국에 있는 수입자는 자국에 있는 수입팩토가 자신의 신용을 보증할 경우 Open Account 방식을 포함하는 사후송금방식, 즉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제팩토링은 오늘날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발전되지 못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금융시스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머징 마켓 국가에 있는 바이어에 대한 신용평가가 어렵고, 또한 그

들은 대상으로 한 추심업무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팩토링을 이용하여 이머징 마켓 국가에로 물품을 공급하는 수출자는 이러한 어려운 업무로부터 해방되거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바이어의 신용위험을 커버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머징 마켓들에서 팩토링금융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지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잠재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팩토링이 상대적으로 성공하는 이유의 하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들이 은행들로부터 충분한 금융을 제공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들에서 국제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제공한 신용이 팩토링에 의하여 쉽게 현금화가 됨으로 대금결제조건 등에서보다 경쟁적인 조건으로 거래제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자는 국제거래에 따른 신용위험과 환위험을 줄임으로 거래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팩토링은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확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팩토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팩토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팩토링의 업무를 시행하던 초창기인 1980년대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제시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 유럽과 미국에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 주요 수출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팩토링서비스 업무도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인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상 역시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신용장 방식과 병행하여 활용되는 국제팩토링거래방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국제팩토링 거래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국제간 거래에서 국제팩토링제도의 증대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에서 제기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팩토링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전문서적, 연구논문, 학술지, 연구보고서)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국내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등의 관련 정부기관 및 각종 매체 등에 게재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주요 국가 및 세계 통계자료는 주로 국제팩토링 금융기관인 IFG(International Factors Groups)<sup>2)</sup>와<sup>2)</sup> FCI(Factors Chain International)<sup>3)</sup>의 보고서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국제팩토링 사무를 선택하고 있는 팩토링 회사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된 문헌, 도서 및 각종 통계자료가 일천하여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범위는 팩토링의 개념과 종류, 팩토링 거래당사자 및 거래절차, 팩토링의 기능과 장·단점 및 국제팩토링제도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세계 팩토링 이용현황, 주요국의 팩토링 이용현황 및 한국의 팩토링 이용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팩토링제도의 이용 증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및 선행연구검토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팩토링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고찰로서 팩토링제도의 개념과 기능, 팩토링의 종류 및 거래절차 및 국제팩토링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제팩토링제도의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먼저 국제무역 결제방식의 변화추이를 분석 한 후 무역결제수단으로서의 국제팩토링의 이용현황과 특징을 주요국가와 한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파악하였다.

제4장은 한국 팩토링의 문제점을 법제도적 측면과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미비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팩토링의 이

---

2) [www.ifgroup.com](http://www.ifgroup.com)

3) [www.factors-chain.com](http://www.factors-chain.com)

용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 제3절 선행연구검토

국제팩토링에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자본시장 개방 및 외환위기 시절인 1990년대에 국제팩토링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를 전후하여 업계의 국제팩토링의 활용이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또한 미비한 현실이다.

남풍우(2002)<sup>4)</sup>는 “우리나라 국제팩토링결제방식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에서 한국에서 팩토링을 취급할 금융기관이 절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장경찬(2002)<sup>5)</sup>은 “팩토링에 관한 연구”에서 각국의 팩토링제도의 비교와 함께 팩토링의 법적구조를 살펴보고 팩터의 제도와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박광서(2007)<sup>6)</sup>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팩토링 이용증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신용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의 수출팩토링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박세훈·한기문(2009)<sup>7)</sup>의 공동연구에서 팩토링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하고 한국의 법제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지를 밝혔다.<sup>8)</sup> 그 밖에 김재형(2006)<sup>9)</sup>의 “유엔채권양도협약의 국제법적 수용문제”에서도 한국 법제정비를 통하여 팩토링의 수용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sup>10)</sup>

4) 남풍우 “한국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사회과학논총」, 제13집, 강남대학교, 2002, pp.37-56.

5) 장경찬, “팩토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6) 박광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팩토링 활용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pp.29-62.

7) 박세훈·한기문, “국제팩토링계약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p.143-168.

8) 팩토링의 당사자에 대한 분석은 실무적 관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한국 팩토링의 문제점을 법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9) 김재형, “유엔 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 15집 제1호, 한국국제거래법학회, 2006.

10) 신용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공급자는 매출채권의 양도를 통해 운전자금을 해소하려는바 채권양도가 국제성을 띠게 되어 이를 위하여 국제규범을 UN이 제정하였는데 한국은 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의 관련연구는 대표적으로 Klapper(2006)<sup>11)</sup>의 “The role of factoring for financ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를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팩토링이 중소기업에 왜 절실히 필요한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외상거래 증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및 신용위험 대처방안으로서의 팩토링의 역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Noel Ruddy와 2인(2006)<sup>12)</sup>은 무역대금결제방법으로 국제팩토링을 소개하는 동시에 신용위험 대처방안의 하나로 국제팩토링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위와 같이 국제팩토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팩토링제도의 특징과 현황 및 신용위험 대처 방안으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반면 중소기업에게 팩토링이 왜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팩토링거래방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국제팩토링 거래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국제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팩토링 활용 증대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11) Leora Klapper, "The Role of Factoring for Financ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ume 30, Issue 11, 2006, p.3111-3130.

12) Noel Ruddy, Simon Mills & Nigel Davidson, *Salinger on Factoring*, 4th ed., London: Sweet & Maxwell, 2006.

## 제2장 팩토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팩토링의 개념과 기능

#### 1. 팩토링의 개념과 발달과정

##### 가. 팩토링의 개념

팩토링의 어원은 Latin어의 'facio' 또는 'facere'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영어표현은 대리인, 중개인 등을 뜻하고 있다.

팩토링이란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발생하는 어음채권 또는 외상매출 채권 및 계약채권을 팩토링 회사가 양도받거나 담보를 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용조사, 매출채권 관리, 대금회수 업무 등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하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행하여지고 있는 팩토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팩토링의 원형은 미국의 표준팩토링이며 위의 의미는 이것을 기준으로 한 정의이다.<sup>13)</sup>

이러한 팩토링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마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에서는 “팩토링이란 팩토링회사가 고객의 물품매매계약으로 발생하는 매출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형식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아울러 채권추심, 경영컨설팅, 회계업무 등의 서비스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나. 팩토링의 발달과정

이러한 팩토링 서비스는 16세기 식민지 시대의 전개에 따라 자국과 식민지간의 식민지 무역을 통하여 취급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미국 동해안지역에서

---

13) 이러한 팩토링은 미국에서 성장한 새로운 금융관련 서비스이며 그 원래의 형태는 전통적 또는 재래적 팩토링이라고 불린다.

영국으로부터 직물의류 등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팩토링이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큰 규모 상인들의 현지 판매 대리인이 아닌 금융제공 서비스와 판매업자에 대한 신용위험인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대적 의미의 팩토링회사가 출현하였다. 그 후 미국시장에서 영국상품을 직접 판매하게 된 동기는 미국에 파견된 팩터<sup>14)</sup>가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들어와서 뉴욕에 중요한 팩터가 속속 설립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 팩터링업무를 측면으로 지원하는 신용정보기관이 발전하였던 것이다. 19세기에는 팩터의 활동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양적인 팽창에 비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팩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반면, 거래처는 남북전쟁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제조업으로 성장했다.

19세기 및 20세기 초에 이르자 상품의 보관, 판매 및 관리업무에 대한 팩터의 역할이 격감되었지만 금융, 신용조사 및 대금회수에 대한 그들의 역할은 거래처에게 보다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기업들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공급과 더불어 팩터는 대상 업계 및 주거래선의 확장, 경영정보의 제공과 마케팅기능 등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중개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sup>15)</sup>

이와 같이 팩토링 금융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는 미국에서의 결제수단으로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사용하는 일이 적어 외상매출채권을 어음할인의 형태로 자금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물품의 발송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송장과 청구서를 보내고, 이를 매출채권으로 기장처리하며, 매수인은 상품수령증을 매도인에게 송부한 후 지급기일에 매도인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한다. 따라서 팩토링에 의한 매출채권의 조기회수가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sup>16)</sup>

14) 원래 팩터란 중개대리인을 일컫었던 말이다. 상인과 딜러는 원격지에 상품의 위탁을 받아 판매하기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것이다(Steffen, Roscoe T. & Danziger, Frederick S., "The Rebirth of the Commercial Factor," *Columbia Law Review*, 36 Colum. L. Rev. 745, 1936, p.13).

15) Roland L. Kramer, *International Marketing*, 3rd. Edition, Cincinnati, Ohio: South Western Publishing Co., 1970, p.447.

16) 박현일, "팩토링의 법적 문제점", 「한국금융법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08,

## 2. 팩토링의 기능 및 장·단점

### 가. 팩토링의 기능

팩토링은 채권매입, 금융제공, 채권회수 등 업무범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매출채권금융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적 기능을 하고.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국제무역에 이용되는 국제팩토링은 무역금융종합서비스로서 수출입자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발생시키는 바, 팩토링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 매출채권의 조속한 현금화

Client는 선급방식 팩토링에 의거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금의 조달이 용이하고 매출채권의 조속한 현금화로 채무의 증가없이 Client의 지급능력이 향상된다.

#### (2) 외상매출채권의 추심서비스 제공

일반적 외상매출채권 담보금융에서 금융기관 담보로 하여 금융을 제공한 외상매출채권의 추심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외상매출채권의 추심 진행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팩토링에서 팩토는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추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대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제팩토링에서 클라이언트인 수출자는 팩토로부터 이러한 추심서비스를 받고 수출마케팅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도 있다.

#### (3) 신용의 제공

일반적 외상매출채권 금융에서 금융기관은 신용에 대한 담보 없이 채권에 대하여 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

른 담보물을 요구한다. 반면에 팩토링에서 팩토는 일반적으로 매입되는 외상매출채권 각각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팩토링에서 외상매출채권의 추심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팩토와 수입국에 있는 팩토가 개입하는 2팩토 시스템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제팩토링에서 수입국에 있는 수입팩토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범위의 신용을 공여하기 때문에 수출팩토는 수출자에게 다른 담보물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 **(4) 자금의 유동화 기능**

팩토링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판매자는 팩터로부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전도금융을 제공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계절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는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재고 및 기타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재고의 담보취득은 팩터가 실제적으로 점유는 하지 않으며 담보취득등기에 의해 제3차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 **(5)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획득 용이**

Client는 팩토링회사를 통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히 국제팩토링의 경우 외국기업은 진출국의 거래처를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진출국의 팩토링회사를 통하여 거래처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고 거래관행 및 기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6) 법적 안정성**

일반적 외상매출채권담보 금융에서 금융기관과 팩토링에서 팩토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 즉 외상매출채권은 외상매출채권 금융에서는 그러한 여신된 자금의 상환에, 그리고 팩토링에서는 팩토링 금융의 상환에 이용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팩토는 클라이언트가 커스토머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양도를 통

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법에 의하여보다 더 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팩토는 커스토머에게 통지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클라이언트가 파산할 경우 팩토가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은 파산인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 (7) 수신업무 및 금리

수신업무가 없으므로 거래기업에게 격기 강요가 없어 거래기업의 이중금리 부담방지, 자금조달을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므로 적용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다.

팩터가 거래처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대해 그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금융기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팩터는 거래처의 요청만 있으면 매입채권의 만기일에 지급을 하거나 또는 대부를 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 (8) 회계 및 기타 기능

팩터에게 받을 채권의 전부를 양도한 판매자는 팩터가 회계적인 지식과 전산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판매자의 회계장부를 대신 기장하거나 컴퓨터로 전산관리한다. 그래서 판매자는 개개의 구매자에 대하여 매출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판매자에 대하여 지역별 상품별 판매실적의 분석 및 판매예측, 재고관리 등에 관한 경영상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판매자의 영업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팩토링은 지급보증기능, 업무대행 내지 경영관리적 서어비스, 금융기능 등 각종의 서어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으며, 이와같은 각종의 기능을 종합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 중 어떤 기능만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팩토링은 그 나라의 성격, 그때의 경제환경 등에 따라 어떤 방면으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팩토링의 금융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중시된 것이 사실이다.

## 나. 팩토링의 장·단점

### (1) 팩토링의 장점

국제팩토링을 이용함에 있어서의 장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출업자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거래처의 개발이 용이하다. 수출팩토링은 사후송금거래방식 또는 인수지급방식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는보다 나은 조건으로 수출 상담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능하다.<sup>17)</sup>

둘째, 조기 자금회수에 따른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팩터는 수출자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여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그 자금으로 다른 무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타처에 이용할 수 있다.<sup>18)</sup>

셋째, 채권관리의 효율화로, 해외 팩토링회사를 통해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외상수출대금 관리를 대신 헤드리드로 해외지사 설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수입팩터의 신용승낙은 현행의 수출어음보험과는 달리 수입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시 채권금액의 100%를 대신지급하는 조건이며, 대금회수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실채권 발생의 우려를 크게 감소 시킬 수 있다. 또한 상품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국의 상관습에 정통한 팩토링회사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 하므로 대금회수미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다섯째, 수출자는 부대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결제는 신용장방식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고 대금회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팩터가 대행하기<sup>19)</sup> 때문에 수출자로서는 수출채권 관리에 따른 제

---

17) 심상진, “한국의 국제팩토링제도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논문집」, 제38집, 제1호,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1996, pp.261-284.

18) 박세훈·한기문, 전계논문, p.65.

19) 특히 회계부서를 두거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의 경우 팩토링을 이용하면 매출채권의 추심에 대해 팩터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장부관리업무를 대행하므로 더욱 유용하다. 즉, 아웃소싱의 효과가 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sup>20)</sup> 여섯째,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고, 신용장개설이 필요 없으므로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상담이 가능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능하다.

한편 수입자 입장에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구매할 수 있다. 즉, 수입자는 팩터가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수출자로부터 외상으로 손쉽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료는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가 부담하게 된다.

둘째,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으로, 물품입수 후 일정 기간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팩터로부터 송부된 선적서류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인도되며 이에 따른 수입보증금의 적립은 필요 없다는 이점이 있다.

셋째, 업무가 간편하다. 신용장 개설시의 수고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거래은행에 대한 한도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sup>21)</sup>

넷째, 신용장개설비용 및 부대비용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수입물품을 인수하고 품질을 확인한 후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수출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분쟁을 제기하면서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여섯째, 수입팩토링거래시 수입업자는 L/C 개설비용, 수입보증금 등이 절감되며 팩토링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다. 다만 국제팩토링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수출팩터수수료 뿐만 아니라, 수입팩터의 수수료도 선적서류 구입대금에 차감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수입팩터 수수료가 있으므로 수출입계약 체결시 이를 감안하여 상품단가가 결정된다.

일곱째, 신용장방식의 서류거래와 달리 대금결제 전에 품질을 확인할 수 있고, 품질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을<sup>22)</sup> 제기할 수 있다. 즉, 팩토링의 경우엔 물품의 하

20) 국제팩토링을 이용하게 되면 수입자에게 신용장 개설비용과 수입에 따른 별도 부담 없이 외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수출경쟁력을 재고시킬 수 있다.

21) 신용장을 개설하면 주어진 금융한도가 소진하나 팩토링시엔 금융한도가 그대로 있게 된다.

22) 수입자의 단점으로는 신용장은 물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이며,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성·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들은 단지 서류만을 근거로 모든 것



자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수입팩터 등 매출채권의 구채권자와 신채권자에 대하여 항변권을 갖는다.

## (2) 팩토링의 단점

국제팩토링이 갖는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법규의 문제점이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국제팩토링제도에 의한 무역거래를 단순송금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무역금융혜택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국제팩토링거래방식의 수입의 경우에는 매 건당 5만불로 금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또는 무역거래량이 큰 기업에게는 이 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수입대금을 60일 이내로 하는 제한조건과 무역금융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이 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둘째, 무역업자의 인식부족 및 금리의 문제점이다. 국제팩토링제도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야 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국제팩토링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전도금융시 타 무역거래방식의 경우에는 네고시 국제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적용받아 유리하나, 국제팩토링제도의 이용시에는 10% 이상의 높은 금리 적용을 받고 있어 불리하다.

셋째, 팩토링 수수료에 따른 금융부담이다. 국제팩토링은 무소구조건에 따른 재무제표 향상과 추심을 아웃소싱하는 장점을 갖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무소구 조건으로 송장할일을 받는 대가로 공급자는 팩터에게 지급보증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sup>23)</sup> 더욱이 국제팩토링은 통상 수출팩터와 수입팩터가 개입되는 제휴팩토링 방식으로 운용되는

---

이 판단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위조나 변조하여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편취하여도 은행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한 대금지급은 독립성·추상성의 원칙에 의해 면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수입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23) 한국의 경우 수출입은행만이 무소구 방식의 팩토링을 취급하고 나머지 두 은행은 소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수수료는 수출입은행보다 저렴하지가 않다. 단, 수출입은행은 할인료가 타 두 은행보다 높아 전체적인 금융비용은 별 차이가 없다.

바, 공급자는 양 팩터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sup>24)</sup> 따라서 전체적인 금융비용은 여타 수출금융에 비해 높아지게 된다.

---

24) 팩토링수수료는 수출팩터와 수입팩터 양쪽으로 분리되어 이중으로 징구된다. 이는 수출팩터는 고객에게 채무자의 신용리스크를 담보하고 있고,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에게 채무자의 신용리스크를 담보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어 팩토링 수수료가 일반 지급보증보다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 제2절 팩토링의 종류 및 거래절차

### 1. 팩토링의 종류

팩토링거래는 팩터의 역할이 거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팩토링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국가에서 팩토링거래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당사자의 기업환경이나 거래관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팩터로서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전적 팩토링거래 형태가 그대로 이용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수정된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세계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팩토링은 거래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들은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sup>25)</sup>

#### 가.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구별

##### (1)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고객의 지급불능의 위험을 팩터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을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라 한다. 고객이 파산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정당한 이유도 없는 데에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클라이언트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은 고객에 대한 정보력이 뛰어난 미국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고객에 대한 신용조사능력이 한계로 팩터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방식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의 경우에도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 가격, 품질, 인도지연 등 상거래의 원인관계로 인한 커스토머의 항변으로 지급이 거절될 경우 팩토링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클라이어트는 선급자금을 반환하고 매출채권을 다시 인수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

25) Walter E. Heller & Company, *Factoring Services*, 1982, p.29.

## (2)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

한국의 경우 팩터의 신용조사 능력부족 등으로 대부분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으로 이루어진다. 팩터가 매입한 채권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기일에 그 대전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팩터가 판매자에게 대신 상환할 것을 청구한다. 이런 경우 팩터는 고객의 지급불능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신용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독일의 팩토는 충분한 경험도 없고 따라서 자기정보의 축적도 없는 터에 미국과 같이 외부의 독립한 신용조사 기관도 발달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팩토는 그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방법인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으로 출발한 것이다. 물론 중국의 목표는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팩토링의 전개이지만 도입후 약 20여년의 경험이 축적한 때에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팩토링의 비중이 50%까지 육박한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sup>26)</sup>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이 대부분 이 방식을 이용한다. 독일이나 영국의 일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팩토링으로 양수채권에 대하여 고객이 그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지급의 이유가 무엇이든 언제든지 팩토가 클라이언트에게 대신 상환할 것을 청구한다. 이를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이라 한다. 이 방식에서는 채권회수불능의 위험은 클라이언트에게 돌아간다. 고객이 파산 기타 지급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지급이 없는 경우는 물론 기일에 임의로 지급하려고 하지 않는 때에도 클라이언트는 채권을 환수하여야 한다. 독일의 팩토링은 주로 이 방식으로 출발한 것이며 팩토링의 대부분을 이 방식 따른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이 대부분이 방식을 이용한다.

---

26) 정희철·정찬영, 「상법원론」, 박영사, 1993, p.416.

## 나. 선급의 유무에 따른 구별

### (1) 선급방식 팩토링

수출팩터가 매입한 채권에 대하여 만기일전에 팩토링회사가 금융공여을 하는 방식이다. 즉, 만기까지의 기간을 채권에 대하여 할인하는 방식이며,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판매자는 선급방식을 목적으로 팩토링 약정을 맺고 있다. 독일에서는 상환청구가능 팩토링에서도 이러한 선급이 행해지고 있고 영국에서도 일부는 이와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한 대가로 선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급의 팩토링을 재래 또는 표준팩토링이라고도 불린다.

어느 나라의 수출팩터도 구입채권의 가격전액을 선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된 상품의 반품 또는 기타 공급계약상의 각종의 클레임이나 대항에 의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팩토링 수수료 이외에 일정액을 유보한다.

미국의 경우 뉴욕의 일반상업은행의 우대금리보다도 2.5% 내지 3% 높은 이자를 거래처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송장의 평균금액, 등 각종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자율에 차이를 두고 있다.

### (2) 만기방식 팩토링

만기방식은 팩토링회사가 채권을 매입하여 판매장부를 작성하고 채권을 관리·회수하는 업무를 인수할 뿐 금융의 선급을 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부족으로 신용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팩터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금액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및 위험부담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팩터가 고객으로부터 매출채권을 구입하되 그 대금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자금을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는 데에 적합하고 일반적으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

링에 이용되고 있다. 이 방식의 이용목적은 신용보증, 채권의 권리·회수, 회계기장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있다.

## 다. 채권양도통지의 유무에 따른 구별

### (1) 통지방식 팩토링

통지방식 팩토링은 클라이언트가 팩토링회사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한다는 뜻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때론 이와 같은 사실의 내용을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한 판매자와 팩터가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계로 채권양도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명으로 구매자에게 양도승낙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팩토링은 송장에 양도문서를 인쇄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독일에서도 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sup>27)</sup> 한국의 팩토링거래의 실무에서는 팩터가 클라이언트에게 채권양도에 관해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를 팩터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방식은 자기의 채권을 금융을 위해 양도하였다는 것을 거래처 및 기타의 제3자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자신이 재정적으로 약체의 기업으로 간주되어 클라이언트의 신용·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2) 비 통지방식 팩토링

비 통지방식 팩토링은 클라이언트의 채권은 팩토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팩토링회사에게 양도되지만 고객에게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판매자의 신용이 상당히 높거나 전도금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27) 미국의 경우 상환청구권이 없이 채권을 매입하면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데, 송장에 보통 “This Account has been assigned to and is payable only XYZ factor if this bill is no found to be connect in aoo respects, XYZ factor must be notified at once”라는 문언이 인쇄되어 있다.

취한다. 이 방식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으로, 팩토링회사는 커스토머에 대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대금을 자기명의로 청구하거나 추심할 수 없다. 다만 팩토링회사는 채무자 기장사무, 채권의 기일관리, 지급독촉장 등을 작성관리하고 독촉장을 클라이언트의 명의로 작성하여 클라이언트나 혹은 직접 커스토머에게 송부하며, 커스토머는 클라이언트에게 지급하고 클라이언트는 이를 다시 팩토링회사에게 인도한다.

독일에서 사정은 같으나 이 나라에서는 묵시방식의 팩토링도 존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묵시적방식의 팩토링이 많은 편이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팩토링은 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묵시적 팩토링방식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이 방식은 매입한 채권을 권리자로서 법적지위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통지방식은 섬유업계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가 기피한다고 하며 독일에 있어서도 확실히 클라이언트의 저항이 강하다. 클라이언트들은 매출채권을 금융을 위해 양도한 것을 거래처에게 알려주는 것은 거래계에서 재정적으로 약체의 기업으로 파악되어 신용·명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상기를 잃게 될 지도 모를 우려를 낳고 있다.

## 라. 국제거래 유무에 따른 분류

팩토링당사자들의 국적에 따라 국내팩토링과 국제팩토링으로 구분되며 국제팩토링의 경우 계약자가 수출업자인가 수입업자인가에 따라 수출팩토링과 수입팩토링으로 분류된다. 팩토링을 업종에 따라 구별한다면 도매 팩토링과 소매 팩토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의상 양자를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팩토링이 그 심사부를 도매부와 소매부로 양분하고 있다. 예컨대, 방직업자로부터 의복제조업자에의 판매 직물업자로부터 중간 가공업자에의 판매, 목재업자로부터 가구제조업자에의 판매 등으로 생긴 매출채권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을 도매 팩토링, 완성품의 메이커가 백화점, 슈퍼 마켓, 체인점 등의 소매점에게 판매해서 생긴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소매 팩토링이라 한다. 어디까지나 팩토링의 내부조직의 문제이며 팩토링계약의 내용,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도매 팩토링은 고객의 수가 적고 그 경영규모가 비교적 크며, 그리고 거래단위가 비교적 큼에 대하여 소매팩토링은 거의 그 반대이다.

### (1) 국제팩토링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으로 일종의 단순송금방식에 의해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때 팩터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무역대금의 지급보증과 지급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거래가 국제간에 걸치는 것을 국제팩토링이라 하며, 이를 다시 계약자가 수출업자인가 수입업자인가에 따라 수출업자가 수입업자가 소재하는 나라의 팩토와 팩토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입팩토링이라 하고 수출업자가 자국의 팩토와 사이에서 수출채권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을 수출팩토링이라 한다.<sup>28)</sup>

일반적으로 국제팩토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팩토링협회에 가입하여 동 협회가 정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국제팩토링협회로서 FCI 및 IFG 등이 있다.

### (2) 국내팩토링

국내팩토링이란 상거래를 행한 클라이언트와 커스토머가 모두 팩토링회사와 동일한 국적을 갖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통 팩토링이라고 하면 이러한 국내팩토링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단순히 팩토링이라고 말할 때에는 국내팩토링을 가리키며, 현재 세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팩토링도 주로 국내팩토링이며, 국제팩토링의 비율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

28) Barbara A. Diehl-Leistner, *Internationales Factoring*, Europäisches Wirtschaftsrecht, (Munich, Germany), Bd. 1, 1992.



## 마. 유사개념과의 구별

###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외상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라는 점에서 팩토링금융과 아주 유사한 금융의 하나가 매출채권담보금융인데 이는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서 제공하고 동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융을 제공받는 방식을 말함. 외상매출채권담보금융은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적·회전적으로 자금을 공여받는다는 점에서는 팩토링금융과 동일하다.

그러나 매출채권담보금융은 금융기관이 외상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없이 매입하지 않고 커스토머에게는 통지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팩토링과 차이가 있다. 외상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기업구매자금 결제 과정에서 기업에게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납품기업에게는 납품대전에 대하여 요청시 매출채권담보금융은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sup>29)</sup> 금융기관에 담보로서 제공하고 동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융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기업과 물품납품업체간 상거래 결제과정에서 은행이 중간에 개입하여 양자 간에 구매자금결제이용 약정을 체결하여 거래가 발생된다. 종합팩토링의 경우, 팩터가 클라이언트의 일체의 매출채권관리업무를 대행해 주는 데 반해, 매출채권담보금융에서는 매출채권관리업무를 고객 자신이 한다는 점에서 두 방식의 차이가 있다.

### (2) 상업어음할인

상업어음할인제도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상거래에 수반되어

---

29) 국제채권협약상 채권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민법상의 금전채권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대륙법계는 물권과 대비되는 채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영미법계에서는 채권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receiv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생한 상업어음을<sup>30)</sup> 금융기관이 할인해 줌으로서 기업에게 단기운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개발된 금융제도의 하나이다. 기업의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단기운전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팩토링과 금융기능이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팩토링은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금융관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어음할인은 개별적이고 단발적인 금융을 제공한다. 둘째,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음할인은 상업어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팩토링은 상업어음뿐만 아니라 비어음인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음할인은 상업어음만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계약에 따라 구상권과 비구상권이 있는데 반해 어음할인은 반드시 구상권이 있다. 넷째, 소구면에서 어음할인은 소구권이<sup>31)</sup> 있으나 팩토링은 무소구가 원칙이다.<sup>32)</sup> 다섯째, 팩터는<sup>33)</sup> 채권회수업무, 장부관리서비스 등의 부대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상업어음할인제도는 그러한 서비스가 없다. 팩토링은 대금회수를 직접 거래처에게 청구 하지만 어음할인은 어음교환소를 경유하여 회수한다. 팩토링의 매출채권의 양도가 고객에게 원칙적으로 통지되거나 상업어음의 할인양도는 발행인에게 통지되지 않는다.

### (3) 포페이팅

- 30) 상업어음은 실제의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되는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이다. 단순히 자금유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유통어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상업어음은 상거래가 원인이므로 그 지급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를 진성어음, 실어음, 상품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은 각종 어음 중에서 가장 안전한 우량어음으로 알려져 있다. 상업어음은 실제의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의 매각대금이 결제자금으로서 기대되는 것이므로 자기 결제력 또는 자기 유통성을 갖는다.
- 31) 소구는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되거나 기타 만기 전일지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 담보 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고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소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만기 일자에 지급인이 지급거절을 하는 어음부도의 경우 외에 만기 전이라도 환어음에 대한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 발행인의 무자력 상태가 발생한 경우 등에 인정된다.
- 32) 팩토링은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는 구매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기 때문이다.
- 33) Concise Oxford Dictionary에서는 팩터를 가리켜 제조업자의 송장을 매입하고 만기에 추심하는 회사로 묘사하고 있다.

포페이팅이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불어의 'a forfait'에서 유래된 용어로 일반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동 채권의 이전 소유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무역금융의 한 형태이고, 포페이팅 거래에서의 매입대상 금융채권은 통상 양도하기 쉽고 국제무역거래에서 많이 통용되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포페이팅은 어음할인식 중장기자본재 신용수출금융이라 할 수 있다. 수출거래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이전의 어음소지인에게 소구함이 없고 고정금리로 할인매입하는 금융거래이다.

포페이팅 시장은 연지급 어음할인시장이라고도 부르며 기본 성격상 수출팩토링과 유사하고 차이점이 또 있다. 팩토링에서는 매출채권이 양도대상이나 포페이팅에서는 환어음이나 신용장이 매개체이고 팩토링은 만기가 30-90일의 단기성금융이나 포페이팅은 90일 이상의 중장기성 금융이다. 포페이팅은 국제팩토링, 즉 수출 또는 수입팩토링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팩토링과 차이가 있다.

팩토링계약이 장래의 불확실한 매출채권의 인수 및 처리를 나타내는 지속적인 거래관계인 데 비하여 포페이팅은 개별적으로 확정된, 어음의 형태로 문서화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팩토링과는 달리 포페이팅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의 할인을 통한 금융제공 방식이다. 팩토링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단기매출채권인 데 비하여 포페이팅은 자본를 중심으로 한 외국으로부터의 중장기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 (4) 수요자금융

소비자금융이라고도 하며 소비자가 내구소비재를 구입할 경우 필요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소비자금융은 금융기관에서 보아 금융기관이 제휴업체인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용공여 하는 제휴방식과 금융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비 제휴방식으로 나누

어진다. 전자는 금융기관과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의 제후 업체 사이에 포괄보증계약이 이루어져 제후업체는 판매하는 상품의 구입자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방법이며, 후자는 금융기관이 특정한 소비재의 구입을 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로, 상환방법은 일괄상환이나 할부상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매출채권이 소비자금융을 통하여 회수되는 효과가 있어 이런 의미에서 소비자금융은 간접적으로 매출채권과 제후된 금융형태라 할 수 있다.

## 2. 팩토링의 당사자 및 거래절차

### 가. 팩토링의 당사자

팩토링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수출채권 매입자인 팩터, 팩터와 팩토링계약을 체결하는 수출채권을 양도하는 수출기업인 클라이언트,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해외수입자인 커스토머로 구성된다.

팩터는 클라이언트로부터 그 거래처의 모든 리스트를 교부받고, 팩토링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수출 팩토링 지원방식에 따라 직접방식의 경우에는 하나의 팩터가 있지만, 제후방식의 경우에는 수출팩터와 수입팩터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제후방식이라 함은 수출팩터가 수입팩터를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해외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인수하는 방식이고 직접방식은 수출팩터가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인수하고 해외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직접추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유럽에서는 이러한 직접방식이 일반적이다.

클라이언트는 영업상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 전부를 양도하게 되어 있다. 수출팩토링에서 수출자가 클라이언트가 된다.

커스토머는 클라이언트의 판매처인 매수인으로써 팩터 입장에서는 제3채무자가 된다. 외상수출채권에 대한 수출팩터의 채무자가 되는 자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무역계약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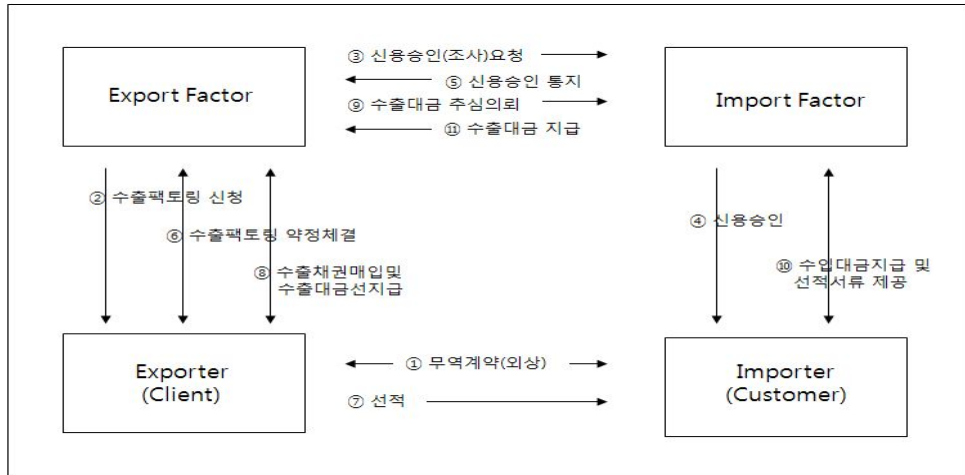
대상이 되고 있으나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수출팩토링에서 수입자가 커스토머가 된다.

## 나. 팩토링의 거래절차

### (1) 제휴방식

팩토링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이 제휴방식과 단독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제휴방식은 수출팩터가 수입자의 신용평가가 어렵거나 수입자국의 채권 양도에 대한 법제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수입자의 신용과 현지의 채권관련 법제에 능숙한 수입팩터를 통해 팩토링의 목적을 수행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해외수입자 및 대규모 수출거래에 이용되며, 제휴방식의 거래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 그림 2-1> 제휴방식에 의한 수출팩토링 거래절차



자료 : 박광서, 전개논문, p.33.

첫째, 수출자는 수출팩터와 수출채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부터는 팩토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수출팩터가 부담한다.

둘째, 수출팩터는 수입팩터를 선택하여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수입팩터가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신용 승낙을 수출팩터에게 통보하면, 이 신용 승낙에 의거하여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안심하고 신용장 방식이 아닌 사후송금방식으로 물품을 선적하게 된다.

셋째, 물품이 선적되면, 수출팩터는 수출자에게 송장금액의 80%내외의 선급금을 제공한다. 넷째, 수입팩터는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송장금액 잔액을 회수하여 수출팩터에게 송금함으로써 수출팩터가 수출자에게 잔금을 정산하도록 한다. 끝으로 물품 선적후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지급 불능상태가 발생하면 외상채권 만기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수입팩터는 송장금액 10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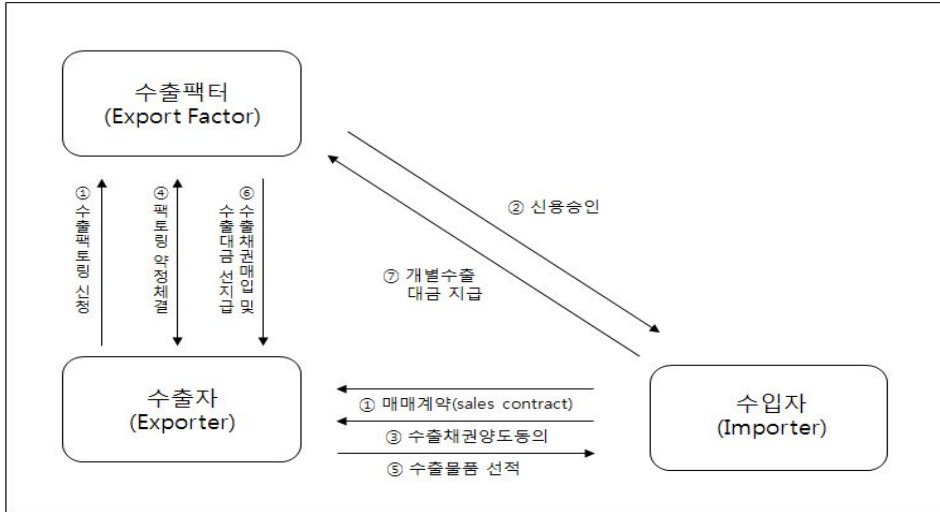
## (2) 단독방식

한편 단독방식에 의한 직접 수출팩토링 방식은 하나의 팩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휴에 의한 간접방식보다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공급자의 매출채권이 수출팩터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관리되므로 만기시 자금입금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전반적으로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수출팩터와 공급자는 채무자의 소재지 법제<sup>34)</sup>나 상관습 및 금융환경에 능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외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직접 수입팩토링 공급자와 수입팩터가 다른 언어를 쓰는 경우에 의사전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팩토링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준거법적용, 재판권 관할 등의 분쟁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이상의 단독방식에 의한 거래절차는 다음 <그림 2-2>와 과 같다.

---

34) 예컨대, 수입국에서 외환통제를 하는 경우이다.

< 그림 2-2> 단독방식에 의한 수출팩토링 거래절차



자료 : 한기문, 전계논문, p.30.

첫째, 수출자는 해외수입자와 사후송금을 대금결제 방법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송금방식 외상거래에 대하여 수출팩터에게 팩토링금융을 신청한다.

둘째, 수출팩터는 해외수입자의 신용평가 후 수출자에게 신용승인한도를 통지한다.

셋째,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이는 수입자가 채권양수인으로서의 팩터가 거래에 개입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출팩터는 대안으로서, 송장상에 채권양도의 사실과 수입대금지급을 팩터에게 지시하는 문구나 이러한 문구가 반영된 팩터의 레이블을 송장에다 붙이게 하여, 채권금액을 수출팩터가 직접 수취하려 한다.

넷째, 수출팩터와 수출자는 수출팩토링 약정을 체결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는 모든 채권 또는 특정 일부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거래이다.

다섯째,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한다. 사전 조치로써 종종 팩터가 물품의 배달인수증 등의 복사본을 요구함으로써 물품인도의 증빙을 입증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여섯째, 수출기업이 수출채권매입신청서와 함께 상업송장과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수출팩터는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수출자는 통상적으로 송장금액의 80-90%를 즉시 선지급 받는다.

일곱째, 수출팩터는 만기에 해외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면 거래절차가 마무리 된다.



### 제3절 국제팩토링에 관한 국제협약

#### 1. UNIDROIT 협약의 탄생배경과 과정

국제물품매매분야에서 법규의 통일을 먼저 주장한 사람은 독일인인 에른스트라벨(Ernst Rabel)이다. 그는 1929년에 ‘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UNIDROIT)에 제출한 보고서<sup>8)</sup>에서 매매에 관한 각국의 실체법의 통일이 바람직하고 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UNIDROIT는 1930년 4월 29일 국제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스칸디나비아 등 유럽제국의 전문가들로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sup>35)</sup> UNIDROIT의 전문위원회는 1935년 국제통일매매법 제1초안을 완성하고, 이를 회원국들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한 다음 그 의견을 참작하여 1939년 제2초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중단되었다.

1935년 및 1939년의 국제통일매매법 초안에서 이룩한 기본원칙은 1980년의 CISG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예로서는 ① 통일법은 몇몇 주요 국가의 매매법 중 중요한 규정을 취사선택하여 조합한 집합물이어서는 안되고 국제상거래 현실을 반영하는 새롭고 포괄적인 법체계이어야 한다는 점, ② 가급적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매매에 관하여는 각국의 국내실체법에 맡기고, 통일법의 적용대상을 국제매매에 한정한다는 점, ③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매매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통일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점, ④ 매매계약이 당사계약인지의 여부 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상인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점, ⑤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각국의 법률이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각국의 법률에 맡긴다는 점, ⑥ 위험부담 문제도 영미법에 취하고 있는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이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를 별개의 문제로서 규정한다는 점, ⑦ 일

35) Peter Winship, *The Scope of the Vienn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ntracts*, published in Nina M. Galston & Hans Smit eds., *International Sal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tthew Bender, 1984.

단 성립된 계약은 가급적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결국은 이행이 되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한다는 점(계약유지의 원칙 채택) 등이다.<sup>36)</sup>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CISG는 2004년 2월 17일 한국도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2006년 3월 1일부터 64번째 계약국이 되었다. CISG 제정과정에서 참여국간 법적 전통이나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이로 어떤 품목이나 주제는 처음부터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어떤 주제는 적절히 타협하였으며, 어떤 주제는 불명료하거나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두므로 결국은 법적 공백이 생기고 애매하고 명료하지 않은 조항을 지닌 상태로 제정되었다.

---

36)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6판, 삼영사, 2008, p.105.

## 2. UNIDROIT 협약의 주요 내용과 평가

### 가. UNIDROIT 협약의 주요 내용

#### (1) 장래채권의 일괄양도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이하 팩토링협약)<sup>37)38)</sup> 제5조 제a항에서는 계약의 체결시 또는 채권의 발생시에 그 채권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현재 또는 장래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조항은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독일의 판례를<sup>39)</sup> 반영하였다. 즉, 독일최고법정은 “장래채권의 양도가 유효하려면 예측가능한 상황하에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양도계약 체결시점에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한 상황하에서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종래의 특정성에 관한 엄격한 태도가 완화되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다른 유럽지역에 파급되었다.

#### (2)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공급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뜻의 합의가 있더라도 공급자가 팩터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고 규정한다.<sup>40)</sup> 그러나 채약국은 자국에 영업소를 둔 채무자에 대하여는 본 조항은 효력이 없음을 선언할 수 있으므로<sup>41)</sup> 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채무자가 그 선언을 한 채약국에 영업소를 둔 때에는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로 되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sup>42)</sup>

---

37) UNIDROIT는 국제팩토링을 위한 규범을 제정했고 이는 1988년 5월 28일 캐나다 오타와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at Ottawa)에서 채택되었다. 3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협약으로서 발효를 하는데 현재까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 발효를 못하고 있다. 한국도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는 한국의 민법과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38) 본 협약에 대한 설명과 조문 번역은 (정재근, “국제팩토링협약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팩토링협약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참조.

39) 1952년 독일 연방대법원(BGH) 판결.

40) UNIDROIT 국제팩토링 협약 제6조 제1항.

41)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 제18조.

### (3)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

팩토링계약에 의해 공급자가 팩터에게 채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공급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채무자에게 공급한 경우 그 유보된 소유권도 팩터에게 이전시킬 합의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팩토링협약 제7조에서 말하는 공급자의 권리에는 매매계약 자체에 관한 권리 즉, 계약해제권, 목적물의 점유회수권 등도 포함하며 매매계약상 발생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파생되는 권리 즉, 매매계약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공급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43)</sup> 또한, 제7조 규정은 팩터와 공급자간에 그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제3자에 대한 효력까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효력문제는 준거법에서 정하는 형식이나 공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sup>44)</sup>

### (4) 후속양도

국제팩토링은 실제로 수출팩터와 수입팩터의 제휴방식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협약은 팩터를 후속양수인으로 지정하고 있다.<sup>45)</sup> 즉, 제휴방식에서는 공급자가 수출팩터에게 양도하고, 수출팩터는 동 채권을 다시 수입팩터에게 양도한다. 실무적으로는 제1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제2의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행하여진다.<sup>46)</sup> 한편, 채권의 후속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법제도를 갖는 국가도 있으므로 그러한 나라의 현실에 따라 본 협약은 팩토링계약에 의하여 금지된 후속양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sup>47)</sup>

42)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 제6조 제2항.

43) 정재근, “국제팩토링 협약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2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1993, p.223.

44) 정재근, 전제논문, p.224.

45)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 제11조.

46) 정봉진, “팩토링의 공시제도에 관한 미국 통일상법전 연구”, 「인권과 정의」, 통권364호, 2006, p.226.

47)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 제12조.

이상에서 보았듯이,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은 그동안 국제팩토링거래에서의 법적공백을 채우는데 탁월한 업적을 남기었다. 그러나 본 협약은 채권의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규정을 하지 않았다.

### (5) 채무자의 반환청구권

팩토링협약은 채무자가 팩터에 대하여 지급한 후 공급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위반 등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팩터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것을 자기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채무자가 팩터에 지급한 금액을 공급자로부터 반환받을 권리를 갖는 한 물품매매계약의 불이행, 불완전이행 및 이행지체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팩터에게 그가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sup>48)</sup> 다만,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팩터로부터 그가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즉, 팩터가 공급자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공급자의 불이행,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사실을 알고서 팩터가 패권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이다.<sup>49)</sup>

## 나. UNIDROIT 협약에 대한 평가

### (1) 표준계약의 설립 필요

각국의 팩터가 적용할 수 있는 기본계약조건을 정립함으로써 법률상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각국의 법원이 표준계약의 해석상 타국가에서 판결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의 조건이나 법률상의 해석에서 분쟁이 없도록 하면 국제팩토링거래가 보편화되어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다.

### (2) 표준계약의 채택

---

48)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 제10조 제1항.

49)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 제10조 제2항.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계약상 협력할 수 있는 표준규약을 채택하여야 한다. 화환신용장통일규칙통일규칙과 같이 표준규약을 채택하므로써 거래당사들은 합의에 의하여 규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 (3) 통일법의 제정

가입국가들이 통일법을 구체화하여 본 협약에 포함시키고 각 국가들이 협약을 준수할 경우에 각국은 의무적으로 통일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통일법은 국내법의 일부가 되어 구속력을 갖게 된다. 여러 국가에서 통일법을 채택하면 채택국가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협약국가의 법원이 같은 의미로 통일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1984년에 만들어진 국제매매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international sales)과 같은 것이다.

### (4) 통일규칙 채택

통일규칙은 전통적으로 외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식적인 외교회의에서 결정하여 협약에 포함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회의는 제안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는 통일규칙을 채택하여 운용하게 된다. 그러면 국제팩토링거래는 회의에 참석한 국가내에서는 점차적으로 널리 이용될 수가 있다.

## 제3장 국제팩토링제도의 이용 현황

### 제1절 국제무역 결제방식과 변화추이

#### 1. 무역결제방식의 종류

##### 가. 송금결제방식

송금결제(remittance settlement)란 수입상이 물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대금의 전액을 송금하거나 수출상이 물품 또는 서류를 인도할 때 수입상이 스스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전송금(advance remittance)과 사후송금(later remittance)이 있다. 송금하는 수단에 따라서는 은행의 송금수표(demand draft: D/D), 우편송금(mail transfer: M/T)또는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T/T)등이 있다.

송금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속한 거래절차와 저렴한 비용이다. 송금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장의 방식처럼 기타의 서류제시 없이 결제가 가능하고 송금수수료 이외의 기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송금수수료도 추심방식의 수수료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추심방식과 더불어 수입상은 무역금융에 대한 부담이 없다. 둘째, 은행의 개입이 전혀 없다. 송금방식에서 은행은 단순하게 대금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결제에 관하여 의무가 전혀 없다. 셋째, 거래의 불안정성이다. 은행의 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제규범인 통일규칙이 없기 때문에 분쟁발생의 소지가 높다. 또한 사전송금방식이나 사후송금방식이나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가지는 위험도 크다. 넷째, 환어음 없이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신용장방식과 추심방식에서는 환어음을 통해 각 거래은행에 대금을 요청하고 지급한다. 그러나 송금방식은 환어음을 작성하지 않는다.<sup>50)</sup>

50) 김인경, “한국수출기업에 있어 대금결제방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1.

## 나. 추심결제방식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서는 추심에 대해서 "추심이란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수표 또는 어음 등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의뢰(요청)를 받아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또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어음이나 수표의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추심결제방식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화환어음을 이용하여 대금을 미래의 특정일에 결제하는 수출거래방식을 말한다.<sup>51)</sup> 이 추심결제방식에는 어음지급 서류인도(document against payment: D/P)와 어음인수 서류인도(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가 있다. D/P는 수입지 은행에서 어음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일괄출급거래를 말하며, D/A는 어음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기한부 거래를 말한다.

추심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출상의 신용공여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수입상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다. 둘째, 화환신용장보다 수입상이 선호하는 대금결제방식으로 같은 품질 및 가격의 물품이라면 수입상은 화환신용장보다는 추심의 대금결제조건을 제시하는 수출상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서 수출상은 수출경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대금을 결제 받은 후 추심관련은행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무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상은 화환신용장거래와 같이 선적 후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수출신용보험제도를 통하여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거절로 인한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 때 수출상은 추심으로 수출하여도 신용장방식과 동일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다.<sup>52)</sup>

51) 황기순,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상 결제위험 관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14.

52) 박세훈, "수출대금결제에서 신용위험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팩토링 포페이팅 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15-16.



## 다. 신용장결제방식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UCP) 제2조에 의하면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이라는 용어는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은행자신을 위하여,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약정된 서류와 상환으로 제3자(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을 이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지급하거나 또는 타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환어음을 지급하고 인수하도록 수권하거나 타 은행이 매입하도록 수권하겠다는 약정을 의미한다.<sup>53)</sup>

신용장의 기능을 크게 대금결제수단과 금융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금결제수단으로의 기능은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인 개설은행이 개입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상품대전의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의 제시 조건하에 상품거래를 서류거래화하여 물품매매 당사자인 수출자에게는 수출물품 선적이후 대금미회수의 위험을 제거하여 주는 한편, 수입자에게는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자가 매매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상품인수 전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기능을 말하고, 금융수단으로의 기능이란 수출자에게는 상품선적 즉시 대금회수를 가능하게 하며 수입자에게는 상품의 도착과 더불어 대금의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나아가 개설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수출입거래의 결제기능이 부여되어 각종 신용편의가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신용장은 그 특성상 여타 지급수단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음이나 수표는 그 부도의 제한이 따르지 않으므로 무조건 지급수단이지만 신용장은 어음의 발행 및 제시권한 그리고 그 양도가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지급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용장거래는 물품이 아닌 서류상의 거래이다.

53) 홍경은, “수출입대금결제방식의 변환에 따른 한국의 수출위험관리의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5.

54) 강진석, 「무역실무론」, 청목출판사, 2001, pp.117-118.

즉,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목적이 물품이 아니고 CIF계약과 같이 서류에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거래에서는 물품이 서류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해도 그 물품을 검사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반드시 서류상의 인수와 결제가 끝난 후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sup>55)</sup>

신용장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다. 신용장은 상이한 국가간의 상거래에서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에 따른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을 제3자인 은행이 보장하는 증서이지만, 은행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과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바, 이것이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추상성(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r abstraction)의 원칙이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은 UCP600 제4조에 의하면 신용장은 명백히 매매계약 등에 의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신용장거래 그 자체는 이들 계약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서 그와 같은 계약과는 무관하며 또는 그와 같은 계약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서류취급의 원칙이다. UCP 600제5조에 의하면 신용장 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지 서류와 관계되는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의 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엄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장이 매매계약과는 별개 거래인 것처럼 신용장거래에서 관계당사자는 물품, 서비스 또는 계약 이행 사항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서류를 취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서류가 분명히 위조된 것임을 알 때에는 비록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sup>56)</sup>

셋째, 엄밀일치의 원칙이다. 엄밀일치의 원칙(strict compliance rule)은 수익자의 제시가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신용장에 일치하지 않고 제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CP 제5조에 의하면 “신용장에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지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기타 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

55) 홍경은, 전계논문, p.6.

56) 한주섭, 「최신 신용장론」, 동성사, 1994, p.47.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엄밀일치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sup>57)</sup>

먼저 신용장을 매입하는 은행은 개설은행의 특별 대리인이고 개설은행은 매수인의 특별 대리인인데, 만약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는 이러한 대리인이 권한범위 밖의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를 부인할 권한이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거래의 상업적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물품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매입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매수인이 서류를 거절하여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를 엄격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매수인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을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엄밀일치의 원칙은 은행업무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은 물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다루는 것이며, 신용장이 개설되는 거래분야는 수 없이 많다. 또한 은행은 보통 특정한 거래의 관행이나 관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서류가 엄격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특정거래나 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sup>58)</sup>

---

57)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1999, p.320.

58) 홍경은, 전계학위논문, pp.7-8.

## 2.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추이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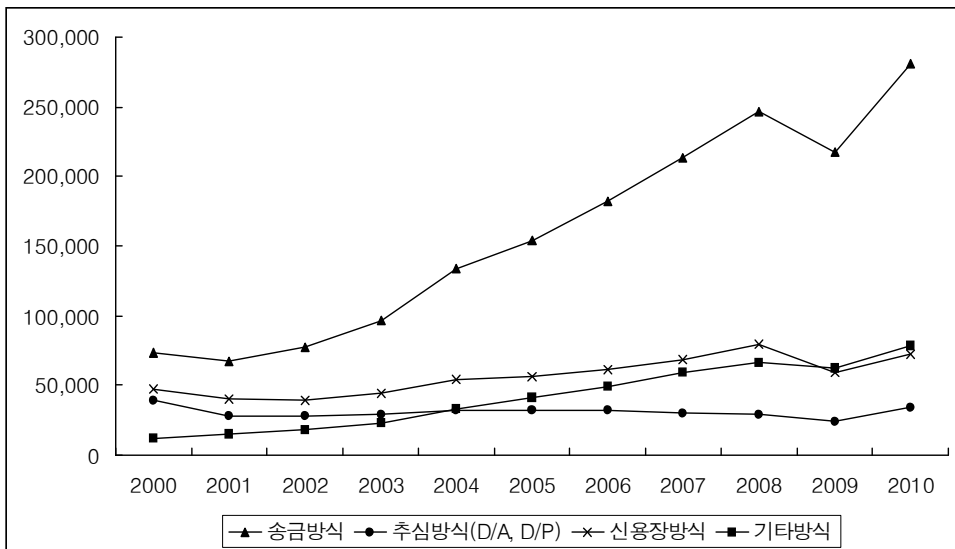
### 가.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추이

과거 수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상은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결제방식으로 신용장을 선호해왔다. 신용장방식의 은행의 지급보증은 타 결제방식에 비하여 높은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수출시장에서의 양 당사자가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용장 방식에 의존해 왔으며, 한국도 90년대 초반 신용장이용 비율이 70%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다음 <그림 3-1>과 같이 2000년 들어 수출액 기준으로 신용장방식의 이용률은 27.6%로 급감하였으며, 2010년도까지 15.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 한국의 결제형태별 수출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http://www.kita.net))로 저자 작성.

또한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도 2000년 이용률이 22.6%로 신용장 방식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7.3%로 결제방식별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송금방식의 이용률은 2000년 42.9%에서 2010년 60.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타방식에 의한 결제도 2000년 6.9%에서 2010년 16.9%로 급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용장 방식의 이용도가 감소하면서 무역결제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나.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요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추이는 신용장 방식의 이용도 감소와 국제팩토링, 포페이딩, 상호이체방식 등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결제방식이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역조건 변화이다. 기업은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협소한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무역을 통하여 시장의 기회가 많은 해외로 판매하는 것이 더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조건 측면에서 해외시장이 보다 유리할 때 수출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출은 기업이 국제화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국내의 임금상승, 원자재가격의 불안정 등의 원인으로 국제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면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무역을 통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무역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수출기업은 거래비용이 비교적 비싼 신용장방식의 거래조건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제시가 어렵게 되어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활용이 용이한 신용장방식 이외의 거래조건을 이용함으로써 수출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sup>59)</sup>

둘째, 수출시장의 경쟁심화이다.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시장에 대한 평가는 보다

59) 장동한·김병선, “무역대금 결제방식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상경연구」, 제26집, 제1호, 2001, p.26.

많은 시장기회를 얻거나 무역거래의 형태와 가격 및 대금결제조건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처음에 수출시장이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하여 생산자시장의 성격을 지닐 경우 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자는 독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수입자는 의사선택의 폭이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인 수출시장에서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신용장방식의 결제가 선호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상품이 성장단계로 접어들면 공급자수가 증가하고 품질과 가격에서 균일화가 진행되어 경쟁이 한층 심화된다. 이 때 수출자는 시장점유를 위하여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도하게 되며, 수입자의 선호를 고려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즉,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다 싼 가격과 편리한 공급처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킬 기회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수출시장의 경쟁심화는 공급자 중심의 수출시장을 수요자 중심의 판매자시장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 때 수출자는 수입자의 기호에 맞는 가격조건제시를 위한 선택에 중점을 둘 것이다. 무역대금 결제방식에서 신용장방식은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시 은행에 충분한 담보금을 제시해야 하므로 수입자에게 상당한 자금 압박과 과도한 이자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나 D/A나 D/P 방식은 수출업자의 호의와 신용공여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경쟁시장일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무신용장방식을 수출경쟁전략의 수단으로 택하여 거래선을 확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60)</sup>

셋째, 외환 수수료의 변화이다. 무역대금은 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환어음의 매입이나 송금의 경우 외환매매가 이루어져 결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무역대금결제에 따르는 외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이것은 대금결제조건에 계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수출업자는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을 하여 수출대금을 결제한다. 이 때 은행은 수출 환어음 매입(negotiation)을 하게 되는데, 결제방식과 결제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수출환어음 매입시 발생하는 외환수수료를

60) 김병선, “무역대금 결제방식의 변화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수출대금결제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14-15.

환가료(exchange commission)라고 한다. 환가료란 외국환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수출업자에게는 어음금액을 즉시 지불하지만 은행에서는 그 어음을 외국은행을 통하여 상환 받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게 되므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상환 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부담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대금결제방식의 변화 중에서 특히 추심방식의 급증은 이러한 환가료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외환수수료율의 증가는 수출자들의 수출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송금방식의 수출은 신용장관련 수수료와 환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금의 조기결제를 통하여 환율변동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외화수수료만큼 수출가격을 인하하여 송금방식으로 수출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61)</sup>

넷째, 제3국과의 교역량 증가이다. 국가간 무역마찰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對선진국 수출비중이 줄어들고 수출 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출규모가 커지고 거래 대상국이 다양해지면서, 무역대금결제형태도 거래 상대국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무역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수출자는 무엇보다 대금결제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결제방식을 지향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후진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하여 민간경제에 관여하는 일이 많은 등 정치적 리스크, 비상리스크, 신용 리스크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후진국과 교역할 때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금결제방식인 신용장 결제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 입장의 편의만 고려한 무역계약조건으로 제한된 시장에서 수출기회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수입시장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약조건 제시가 중요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수출업

61) 정현우, “수출기업의 대금결제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 대금결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13.

자 입장의 결제방식인 신용장거래는 신용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하다. 그러나 수입자에게는 과도한 자금부담과 금융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렴한 수출가격 제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약점이다. 따라서 수출업자들이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기대하여 수입업자 편의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대금결제조건 제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는 무역대금결제방식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본다.



## 제2절 국제팩토링의 이용현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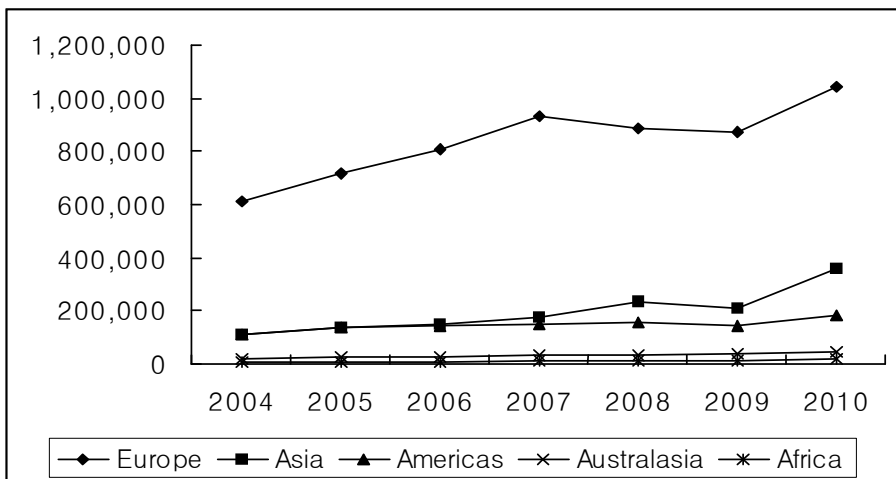
### 1. 국제팩토링 이용현황 개괄

#### 가. 지역별 이용현황

현재 국제 팩토링 금융기관조직으로는 IFG(International Factors Groups)와 FCI(Factors Chain International)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양쪽 모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팩토링제도 이용현황을 FCI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3-2>와 같다.<sup>62)</sup>

<그림 3-2> FCI 팩토링제도 이용 현황 추이

(단위 : 백만유로)



자료 :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p.23.

FCI를 통해 이루어진 팩토링 거래규모는 다음 <표 3-1>과 같이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6천5백억유로로 2005년 대비 198.3%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62)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Drukkerij Mart. Spruijt bv, Amsterdam, NL, pp.1-24.

2010년 FCI가 세계 팩토링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임을 감안하면 세계 팩토링 규모는 2조2천6백억유로로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3조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지역이 약 1조유로 전체 이용실적의 63.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가 21.6%, 북남미가 11.2%, 호주가 2.8%, 아프리카가 1.0%의 순을 보이고 있다.

거래형태별로는 국내거래가 1조4천억유로로 85%, 국제거래가 2천4백5십억유로로 15%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거래의 이용 비율이 높은 구조를 나타내었다.

<표 3-1> FCI 팩토링 이용 현황(2010년)

(단위 : 백만유로, 개, %)

구분	팩터수	국내거래	국제거래	합계
유럽	592 (24.3)	900,655 (64.2)	144,415 (58.7)	1,045,069 (63.4)
북남미	1674 (68.7)	173,065 (12.3)	12,292 (5.0)	185,357 (11.2)
아프리카	18 (0.7)	16,110 (1.1)	576 (0.2)	16,686 (1.0)
아시아	127 (5.2)	267,071 (19.0)	88,531 (36.0)	355,602 (21.6)
호주	26 (1.1)	45,430 (3.2)	85 (0.0)	45,515 (2.8)
전체	2,437 (100.0)	1,402,331 (100.0)	245,898 (100.0)	1,648,229 (100.0)

자료 :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p.22.

## 나. 국가별 이용현황

국가별로는 2010년 기준 GDP규모 대비 팩토링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21.0%를 차지하였으며, GDP 대비 팩토링 이용비율이 10%를 넘는 국가는 사이프로스(20.1%), 영국(13.6%), 아일랜드(13.2%), 포르투갈(12.2), 칠레(10.9%), 스페인(10.8%)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GDP대비 팩토링 이용 비중은 0.7%로 전체 FCI(Factors Chain International) 가맹국가중 39위로 나타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 3-2> GDP규모별 FCI 팩토링 이용 현황(2010년)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GDP규모	GDP대비 팩토링 비중	팩터링규모
1	Taiwan	429,845	21.0	90,450
2	Cyprus	23,174	20.1	4,658
3	United Kingdom	2,250,209	13.6	305,428
4	Ireland	206,985	13.2	27,266
5	Portugal	229,154	12.2	28,021
6	Chile	203,299	10.9	22,170
7	Spain	1,409,946	10.8	152,427
8	Italy	2,055,114	9.4	194,056
9	Belgium	467,779	9.3	43,474
10	Hong Kong	224,459	8.7	19,440
11	France	2,562,742	8.1	206,890
12	Turkey	735,487	7.2	52,634
13	Finland	239,177	7.0	16,740
14	Greece	305,415	6.5	19,865
15	Croatia	60,834	6.2	3,771
16	Netherlands	780,668	6.1	47,250

17	South Africa	363,655	5.6	20,412
18	Sweden	458,725	5.5	25,326
19	Germany	3,286,451	5.3	174,874
20	Norway	412,990	4.9	20,351
21	Australia	1,237,363	4.9	60,635
22	Poland	469,401	4.7	21,884
23	China	5,878,257	3.5	208,643
24	Singapore	222,699	3.5	7,830
25	Denmark	309,866	3.5	10,800
26	Hungary	130,421	3.5	4,508
27	Brazil	2,090,314	3.2	66,218
28	Czech	192,030	3.1	5,954
29	Austria	377,382	3.0	11,214
30	Japan	5,458,797	2.4	132,975
31	Peru	153,802	2.4	3,661
32	Mexico	1,034,308	1.9	19,626
33	Colombia	289,433	1.3	3,758
34	Russia	1,409,946	1.2	16,420
35	Switzerland	527,920	1.0	5,400
36	United Arab Emirates	302,039	0.9	2,700
37	Thailand	318,908	0.9	2,828
38	United State	14,526,550	0.9	128,250
<b>39</b>	<b>Korea</b>	1,014,482	0.7	<b>6,857</b>
40	Canada	1,577,040	0.3	5,026

주 1) GDP규모는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1의 자료임.  
 자료 :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p.22.

한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대만, 홍콩, 중국의 GDP 대비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 국가들의 대유럽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고, 유럽측

수입업자들이 신용장 개설 대신에 Open Account조건으로 거래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 국가들의 수출자들은 유럽 국가들에 Open Account방식으로 수출을 행하고 운전자금조달이나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팩토링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간의 무역에서 국제팩토링 금융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주요 국가별 팩토링 이용현황 및 특징

많은 선진국가들이 불황기의 경제 속에 교역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팩터링 실적은 오히려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무역거래의 결제방식이 신용거래로 접어들면서 더욱 전문화, 단순화되어 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팩토링 결제방식의 근원지인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국제팩토링 결제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이용현황을 분석한다.

### 가. 미국의 팩토링 현황 및 특징

#### (1) 팩토링의 도입

미국의 팩토링제도는 1950년대 후반에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미국이 취해왔던 팩토링거래의 방식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방식이다. 미국에서 팩터의 전신은 상품 위탁판매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팩토링은 1620년 청교도들이 결성한 'Polgrim Partnership'이라는 조합과 그들에게 항해비용을 용자해 주었던 런던의 3대거상들 사이에 체결된 팩토링계약이 있었다.

#### (2) 팩토링 이용현황

2010년 현재 FCI에 등록된 미국의 팩터수는 브라질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300개이고, 미국의 팩토링 규모는 2004년 약 810억 유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 950억 유로에 달하였다. 이 중 850억 유로가 국내 팩토링으로 운용되었고 단지 100억 유로만이 국제팩토링거래로 운용되었는바, 미국에서는 국내팩토링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팩터들은 신용조사능력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환청구불능조건부 팩토링이 원칙이다. 팩터들은 거래처별로 적정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각각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한다. 미국의 상관습상 국내거래에서는 어음이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명채권은 어음형태가 아닌 상업송장이 일반적이다.<sup>63)</sup>

〈표 3-3〉 미국과 미주지역 팩토링 이용 실적

(단위: 백만유로)

2010년 미국팩토링 실적		2010년 미주지역 팩토링 실적					
국제팩토링	국내팩토링	미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캐나다	기타
10,000	85,000	95,000	49,050	16,422	14,538	3,723	6,624

자료 :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p.22.

### (3) 팩토링의 특징

미국의 팩토링 시장은 매우 성숙되어 있다. FCI에 따르면 미국내 팩토링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300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미국의 팩토링은 전 세계적으로 기초모델로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이다. ② 매출채권을 전부 매입한다. ③ 팩토링 대상채권은 상품송장이다. ④ 본질적인 팩토링 업무가 정착되어 있다. ⑤ 신용조사능력이 발전되어 있다.

## 나. 영국의 팩토링 현황 및 특징

### (1) 팩토링의 도입

영국은 14세기 후반에 모직물시장에서 활동한 중개인의 역할이 팩터로 발전하게 된다. 중개인들은 제조회사인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다음으로 팩토링의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현대적 의미의 팩토링이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초기이며 1970년대 초까지 다수의 팩터가 설립되었다.

그 최초의 팩터는 1960년 Lloyds & Scottish Finance와 미국 First nationga Bank of Boston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International Factors, Ltd가 있다.

63) 허은숙·구종순, “후불조건 수출금융방식으로서의 수출팩토링”,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p.219.

영국에서 현재적 팩토링이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초반, 아주 심한 금융압박의 시기가 있었다.<sup>64)</sup> 이것이 다수의 팩토링 회사를 도입하고 설립을 촉진시켰으며, 영국에서 팩토링이 도입된 주 목적은 당시 은행의 용자제한으로 기업들의 부족한 운전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데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는 팩터들의 영업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주요 은행들도 팩토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시장진출이 늦어진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1970년대 영국의 팩토링 취급액을 살펴보면, 1960년대 중반 연간 약 1억 파운드였고 1970년대 초에는 약 10억 파운드에 달했지만 1974년 말에는 5억 파운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숫자는 GNP의 약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1979년 GNP의 약 1.16%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많은 은행들이 팩토링 분야에 진출했다는 사실과 팩토링 관련 신용관리가 예상보다 용이하다는 사실이 인식된 후 영국은행들은 1970년대에 들어서 기준 팩터의 매수 내지 신설 등의 방법으로 팩토링 시장에 진출하였다.<sup>65)</sup> 최근 영국의 팩토링 회사들은 과거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금융업무보다는 매출채권관리업무나 대금추심업무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 (2) 팩토링 이용현황

영국은 미국, 극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와 달리 국제팩토링 부문에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영국에서의 팩토링 규모는 2007년 1천8백8십억유로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다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0년 2천2백억 유로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다.

또한, 영국은 FCI에 등록된 팩터수는 44개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팩터의 수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팩토링 실적이 2천1백억 유로, 국제팩토링 실적이 1백5십억 유로로 영국에서도 역시 국내팩토링 실적이 월등히 높다.

---

64) Freddy R. Salinger, R. Bruce Wood, *Factoring: The Law and Practice of Invoice Finance*, London: Sweet & Maxwell Ltd., 1999, p.11.

65) 장경찬, 전계논문, p.54.



〈표 3-4〉 영국과 유럽지역 팩토링 이용 실적

(단위: 백만유로)

2010년 영국팩토링실적		2010년 유럽지역 팩토링 실적					
국제팩토링	국내팩토링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기타
15,498	210,745	226,243	153,252	143,745	129,536	95,000	297,293

자료 :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p.22.

### (3) 팩토링의 특징

영국의 팩토링은 미국의 팩토링회사와의 직접적인 합작회사 또는 강력한 업무제반관계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팩토링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대부분 전통적 팩토링인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영국 고유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주요 팩토링회사 중 대부분이 구형팩토링(미국의 전통적 팩토링)을 행하고 있는데, 한편 영국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팩토링도 존재한다. 영국에 'undisclosed factoring'이라고 하는 신형상품 팩터의 제도가 있다. 이 방식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이며 금융제공 후 채권회수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위험은 모두 팩터가 진다.

하지만 이 방식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금융지원 대상의 거액은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우량한 기업이 대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출채권의 형식을 빌어서 금융지원만 하는 방식이다. 현재에도 자동차부품, 전기제품 및 기타 영역에서 마케팅기능을 가지고 있는 팩터가 바로 이것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송장할인이란<sup>66)</sup> 이름의 비통지부 팩토링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한 후에 작성한 일인기관에게 양도하고 차주가 모든 상품판매대장을 작성하여 대금을 추심하는 거래로 구입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한국나 일본 등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음할인제도와는 전혀

66) HSBS은행 등 영국의 주요 상업은행들은 송장을 매개로 하여 무소구나 소구부 팩토링을 하는데 구매자에게는 매출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른 할인에 의한 금융방식이다. 이는 영국의 경우 19세기까지는 국내 상거래에서 환어음이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나 오늘날 영국에서는 국내상거래나 국제상거래에 어음이 거의 이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송장할인은 상환청구권이 없이는 매입하지 않으며, 구매자에게도 통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팩토링과 차이가 있다.

## 다. 독일의 팩토링 현황 및 특징

### (1) 팩토링 도입과 이용현황

독일은 1956년에 팩토링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기본적인 형태는 미국 팩터의 진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일은행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sup>67)</sup> 미국의 완성형 단계를 직접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팩터와 거래기업이 서로의 환경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팩토링을 취급하였다. 1963년에는 미국의 유명한 Walter Heller Inc. Heller Factoring Bank AG를 설립하였고 이후 팩토링 회사는 계속하여 신설되어 1971년에는 11개사에 출현하였다..

2010년 국내팩토링 실적은 994억 유로, 국제팩토링은 301억 유로로 국내팩토링 비중이 높다. 2010년 기준으로 FCI에 등록된 팩터는 100개 기관이다.

---

67) 최초로 개업한 Kredi bank 은행은 공급자의 외상채권을 비통지방식으로 매입하여 채권액의 90%까지의 선급을 행하였다. 채무자 장부의 작성, 공급자의 이름으로 청구서와 독촉장을 작성하였으나 신용위험은 인수하지 않았다. 이 은행은 그 후 보스톤 은행과 제휴하여 국제거래를 취급하였는데, 1963년에는 팩토링 전문회사로서 신설된 Inter-Factor-Bank에 팩토링 업무를 이행하였다.

〈표 3-5〉 독일과 유럽지역 팩토링 이용 실적

(단위: 백만유로)

2010년 독일팩토링 실적		2010년 유럽지역 팩토링 실적					
국제팩토링	국내팩토링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기타
30,125	99,411	129,536	153,252	143,745	226,243	112,909	279,384

자료 :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p.22.

## (2) 팩토링의 특징

독일에서는 팩토링이 도입된 1956년 이전부터 저축은행에서 공급금융방식이라는 특수한 금융을 취급하였다. 그것이 팩토링과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 팩토링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금융공급방식은 은행과 상품의 판매자, 매수인의 3자간에서, 매수인의 채무를 은행이 매도인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이 방식의 절차는, 은행은 구매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여 구매자 별로 한도액을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공급자의 물품대금지급 채무를 은행이 보증하는 것이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공급과 계산서를 발부하고 구매자는 하자가 없을 경우 은행에 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즉, 공급자는 채권할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구매자가 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은행에 지급하는 것이다.<sup>68)</sup>

이 방식은 은행이 연대채무자로서 지급한다는 점에서 형식은 다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 방식도 매도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여 대금을 곧바로 지급한 것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팩토링이 신용위험인수하의 채권매입이지만, 독일에서는 신용위험인수가 팩토링의 요건이 아니다. 만약에 독일이 신용위험 인수방식으로 출발하였다면 상당히 제한된 범위로 밖에 팩토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68) 장경찬, 전계논문, p.37.

## 라. 일본의 팩토링 현황 및 특징

### (1) 팩토링 도입과 이용현황

유럽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팩토링이 도입된 것에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이 보다 늦게 도입되었다. 미국 팩토링제도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서 팩토링은 1971년 처음 등장하였으나, 일본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팩토링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채권보전 등에 사용된 매출채권의 양도에 대한 저항이었는데 이는 어음거래가 발달하여 결제수단으로서 넓게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일본에서 팩토링업무가 발전되지 않은 주 요인은 ① 기업의 도산율이 높고 신용정보에 대한 조사기법의 미비 ② 신용조사기관의 발달이 잘 안 되어 있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거래에 자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③ 어음제도가 발달하여 채권의 회수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 등이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대만, 중국 등을 중심으로 팩토링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 기준 팩토링 규모는 3천5백5십억유로 규모이다. 이중 일본의 팩토링 규모는 985억 유로인데 이는 한국 팩토링 규모의 약 2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일본은 2003년 약 665억 유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985억 유로로 성장한 것인데, 이중 국내팩토링은 977억 유로로서 일본 역시 국내팩토링 실적이 절대적으로 높다.

일본에서 국제팩토링 시장이 국내팩토링 시장보다 협소하여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즉, 일본의 중소수출기업들은 종합무역상사를 통해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정보력이 강한 종합 무역상사가 스스로 해외구매자의 신용리스크를 부담함과 동시에 필요시 중소수출기업에게 일시불로 구매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 사이의 외환채권의 매매가 제한되어 있다.<sup>69)</sup> 일본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FCI에 등록된 7개 팩터가 있다.

69) 志村和次郎, 「ファクタリングの実務」, 中央経済社, 2003, p.43.

〈표 3-6〉 일본과 아시아지역 팩토링 이용 실적

(단위: 백만유로)

2010년 일본팩토링 실적		2010년 아시아지역 팩토링 실적						
국제팩토링	국내팩토링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한국	기타
800	97,700	98,500	154,550	67,000	14,400	5,800	5,079	10273

자료 :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p.22.

## (2) 팩토링의 특징

일본의 팩토링 특징을 열거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어음이 많다는 것이다. 팩토링거래에서도 어음이 주로 팩터에게 양도된다. 일본의 팩토링업무는 대부분 매출채권의 양도에 의한 것 보다는 어음의 할인이나 단순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제공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매출채권양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잘 못되어 있다. 일본의 팩토링거래에는 받을어음의 양도라는 형식이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어음이 기업간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의 국내팩토링은 어음을 매개로 하는 매출채권할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복수의 은행거래를 하는 것 등은 한국의 국내팩토링과 중소기업들의 금융관행 현실과 유사하다.

## 마. 중국의 팩토링 현황 및 특징

### (1) 팩토링의 도입

팩토링은 1980년대에 중국에 유입되었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의 최근 몇 년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sup>70)</sup> 중국은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팩토링 회사와 팩토링 컨설팅회사 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992년 뱅크오브차이나( Bank of China)가 처음으로 국제 팩토링 업무를 시행하였고, 1993년 2월에는 FCI에 가입하여 정식회원이 되었다. 현재 중국 국제팩토링 연합회의 정식회원은 교통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광대은행, 증신실업은행과 포동발전은행 등 12개 은행과 비은행기관 팩토링회사가 FCI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뱅크 오브 차이나의 업무가 활발한 편이다.

중국에는 외국의 신용보험회사들이 합작 형태로 진출해 있고 이들이 적극 수출팩토링을 취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3위의 신용보험회사인 Coface의 경우 중국내 2만 5천개의 회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신용평가업무를 기반으로 수출팩토링을 야심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들은 2008년 이후 5년내 중국내에서 8십억유로의 수출팩토링을 취급할 계획을 밝혔다.

중국의 팩토링시장은 여전히 아직 초창기이지만 많은 은행들이 팩터가 되고자 준비 중이다. 최근 들어, 중국연해개방도시와 국내 수출기업은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D/A, O/A등을 사용하는 등 비신용장 결제방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국제팩토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팩토링시장은 국내외 팩터들에 의해 점진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장차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71)</sup>

---

70) 팩토링의 운영적 측면에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잠재성장지역으로 간주된다.

71) 허은숙,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팩토링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제12집, 제1호, 한국아시아학회, 2009, p.179.

## (2) 팩토링 이용현황

2010년 기준 중국은 23개 은행이 FCI에 가입하였고, 2010년 팩토링 규모는 1천 5백억 유로이며, 이중 국내팩토링이 1,200억 유로로 FCI 가입국중 10위, 국제팩토링 규모는 346억 유로로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7〉 중국의 팩토링 이용 실적과 추이

(단위: 백만유로)

2010년 중국팩토링 실적		2010년 중국팩토링 추이			
국제팩토링	국내팩토링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4,590	119,960	32,976	55,000	67,300	154,550

자료 :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p.22.

### 제3절 한국의 팩토링 이용현황 및 특징

#### 1. 한국의 팩토링 이용현황 개관

##### 가. 팩토링의 도입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종합금융회사와 은행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sup>72)</sup> 국내팩토링 업무를 도입하여 취급하여 왔다. 한국에 팩토링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현재 팩토링의 발상지인 미국보다는 약 50년,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보다는 약 10년 늦은 1975년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초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해외시장정보 및 수입자의 신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수출대금회수에 큰 위험이 뒤따랐으며,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아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소액수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민간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나누어 도입되었으며, 팩토링의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당시 정부가 산업 주도적 역할을 중화학공업과 수출산업육성에 우선하여 집중하였기 때문에 정책금융면에서 팩토링이 외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체의 신용조사기법도 초보적인 단계였으며 상거래상 통용되고 있던 어음제도는 금융권에서 할인어음도구로서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보증기능 업무의 낙후, 팩토링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등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73)</sup>

1979년 초에 아세아종합금융주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팩토링 업무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아세아종합금융주는 당시 대우중공업주와 매출채권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팩토링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본격적인 팩토링과는 성격이 약간 달랐다. 성격은 상환청구권부 방식으로 채권의 회수, 관리업무, 선급

72) 현재 팩토링을 포함한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전업사가 두산캐피탈 등 15개사, 겸영사는 15개사로 도합 30개사이다.

73) 강길원, 「팩토링금융제도연구」, 무역경영사, 1983, pp.137-138.



금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보적인 팩토링이었다.

1980년 종합금융주 및 단기금융회사들이 주축이 되어 이들이 재무부로부터 국제팩토링업무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면서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팩토링거래는 기존의 무역관행이나 관련법규의 미정비로 인하여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하였고, 이에 따라 1981년 4월에 정부는 단기금융회사들도 팩토링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981년 투금사로 팩토링 취급기관이 확대되었다. 1981년 민간 팩토링 회사인 금성팩토링주가 처음 등장하였다. 금성팩토링주는 전국 500여 개의 금성사 특약대리점을 고객으로 하고 칼라TV 할부판매채권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은 자체 팩토링 금융의 재원조달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칼라TV의 판매증대가 어느 다른 생산품목보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sup>74)</sup> 당시 팩토링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컴퓨터의 조기 보급으로 고객 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원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3년에는 당시 5개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으로 팩토링업무가 허용되었다.<sup>75)</sup> 국내의 은행권들은 1983년 초에 금융단협정에서 팩토링 취급방안을 정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1984년 7월 금융단협정이 일괄 폐지됨에 따라 팩토링 업무는 자율화 되었다. 그 후 팩토링업무는 1986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신기술금융회사와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의 부수 업무로서 취급이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정부 주도하에 팩토링을 도입한 종합금융회사는 팩토링 영업이 한참 활성화되던 1994년에는 9조원 대까지 잔액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국내 팩토링 회사들이 국제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국제팩토링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

74) 강길원, 전계서, p.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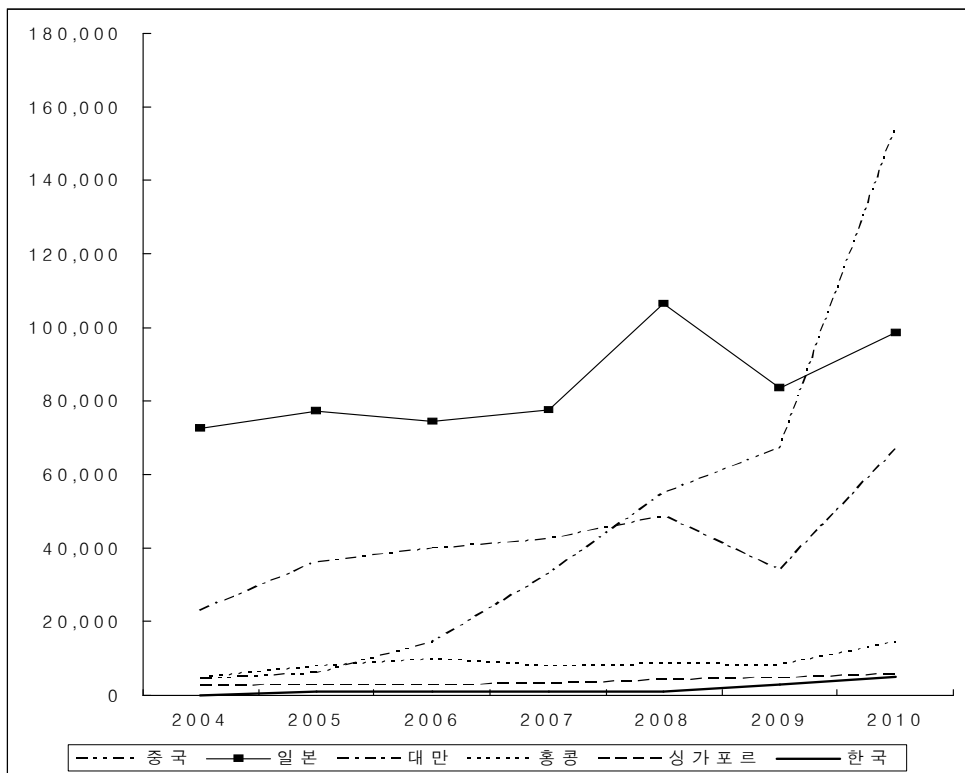
75) 이소한·서근우, 「팩토링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8, p.8.

## 나. 팩토링 운영 현황

FCI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팩토링 규모는 약 50억유로 규모로 GDP규모 대비별로는 0.7%로 세계 39에 그치고 있는 실적이다. 아시아 주요국가와의 비교에서도 다음 <그림 3-3>과 같이 아시아 전체 이용실적의 1.43%로 나타나 한국의 경제규모와 교역규모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이 국제팩토링 영업을 시작한 2005년 이전의 거래금액은 미미하였으나, 2005년 국제팩토링의 거래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 아시아 주요 국가별 팩토링 이용 실적

(단위: 백만유로)



자료 :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p.22.

국가별로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 대만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년대비 증가율면에서는 중국의 129.6%, 대만의 98.2%, 홍콩의 78.2%에는 뒤지나 일본 17.7%, 싱가포르 23.4%에는 앞서는 72.9%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평균 성장률 69.3%와 전세계 평균 성장률 28.4%를 상회하고 있다.

〈표 3-8〉 아시아 주요 국가별 팩토링 이용 추이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년대비 증가율
중국	5,830 (4.3) <sup>1)</sup>	14,300 (9.6)	32,976 (18.9)	55,000 (23.4)	67,300 (32.0)	154,550 (43.5)	129.6
일본	77,220 (57.0)	74,530 (49.8)	77,721 (44.6)	106,500 (45.2)	83,700 (39.9)	98,500 (27.7)	17.7
대만	36,000 (26.6)	40,000 (26.7)	42,500 (24.4)	48,750 (20.7)	33,800 (16.1)	67,000 (18.8)	98.2
홍콩	7,700 (5.7)	9,710 (6.5)	7,700 (4.4)	8,500 (3.6)	8,079 (3.8)	14,400 (4.0)	78.2
싱가포르	2,880 (2.1)	2,955 (2.0)	3,270 (1.9)	4,000 (1.7)	4,700 (2.2)	5,800 (1.6)	23.4
한국	850 (0.6)	850 (0.6)	955 (0.5)	900 (0.4)	2,937 (1.4)	5,079 (1.4)	72.9
아시아	135,470 (13.3) <sup>2)</sup>	149,606 (13.2)	174,244 (13.4)	235,418 (17.8)	209,991 (16.4)	355,602 (21.6)	69.3
전세계	1,015,798	1,133,423	1,300,666	1,324,650	1,283,559	1,648,229	28.4

주 1) : 아시아 전체 대비 점유율.

주 2) : 전 세계 총 실적 대비 아시아 점유율.

자료 :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p.22.

## 2. 주요 은행별 팩토링 이용현황 및 특징

### 가. 주요 은행별 이용현황

현재 한국에서 무역금융으로 국제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국내 은행인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이 있고 외국은행으로는 시티은행이 있다.<sup>76)</sup>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은 국제팩토링그룹(FCI)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해당 외국 수입국의 팩토링 금융기관과의 2팩토 시스템<sup>77)</sup>이나, 또는 단독의 1팩토 시스템<sup>78)</sup>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업자에게 국제팩토링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으로서 시티은행은 주로 1팩터 시스템으로 수출팩토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금융기관들은 국제팩토링으로서 주로 수출팩토링 영업만을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원자재 수입에 대한 수입팩토링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 (1)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한국에서 현재까지 실제적인 국제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무소구조건으로 팩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은 다른 은행과 달리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상거래는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로, ① 국내기업의 직접수출 거래 및 중계무

---

76) 외국계 은행 중에는 HSBC, Standard Chartered 등 소수의 은행이 한국에서 국제팩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대기업위주로 Invoice Discountin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위한 무소구방식의 팩토링을 전적으로 하는 해외의 전문팩터는 없다.

77) 수출입은행의 수입국 팩토링회사를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서 제휴방식이라고도 하며, 이 방식은 세계적 규모를 갖추지 못한 해외수입자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78) 수출입은행이 직접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직접방식이라고도 하며, 이 방식은 세계적 규모의 해외수입자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된다.

역 거래, ② 국내기업의 국외 현지법인을 경유하는 거래, ③ 국내기업이 원재료를 제공하여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의 수출거래, ④ 국내기업의 국외 현지법인이 제3국 수입자 앞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sup>79)</sup>

대상 수출채권은 직접방식인 경우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수입자 신용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이며, 제휴방식은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대상기업은 수출업자인 경우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 실적이 있거나 동일 해외 수입자와 과거 1회 이상 거래 경험이 있는 수출기업이며,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외국기업, 외국정부, 국내기업의 국외 현지법인 등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팩토링 거래방식은 수출거래별로 수출채권 매입한도(수출팩토링 회전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수출채권을 개별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수수료는 할인료와 수출팩토링 수수료로 구분되는데 할인료는 연 Libor+0.5%-1%정도이고, 수출팩토링 수수료는 제휴방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지원방식,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 수입국의 국가위험, 대금결제기간, 수출기업의 수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통상 수출채권의 0.4%-0.8%정도이다.

이중 수출팩터 수수료는 수출채권의 0.05%-0.5%이고, 수입팩터에게 지급되는 수입팩터 수수료는 수출채권의 0.35%-0.6%이다. 수출채권 매입대금 지급은 수출기업의 수출이행능력, 수출제품의 하자발생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수출채권 매입시 수출대금의 80-10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유보금으로 해외수입자가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결제하면 수출기업에게 지급한다.

수출기업의 책임 및 담보에 관하여 만기일에 해외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수출기업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에게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출팩토링을 이용한 매입절차는 수출기업이 수출채권매입신청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사본을 수출입은행에 제시하면 수출입은행은 수입국의 국가위험 및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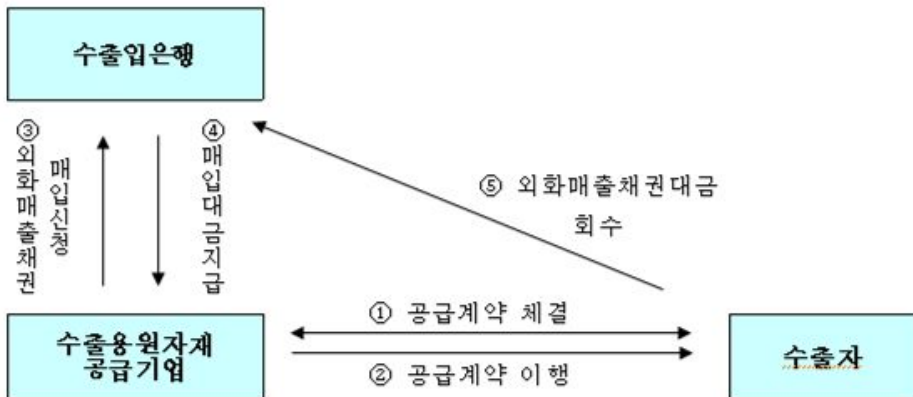
79) [http://www.koreaexim.go.kr/kr/work/banking/trade/trade\\_01.jsp](http://www.koreaexim.go.kr/kr/work/banking/trade/trade_01.jsp).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수출대금에서 유보금과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도가 양호하지 않거나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수출자 앞으로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외화표시매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추가적인 담보 없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용원자재공급 팩토링금융서비스를 2006년 1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은 외화매출채권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수출용원자재 공급이행 즉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공급대금은 만기일에 수출입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게 된다.

수출용원자재공급 팩토링금융의 이용절차는 다음 <그림 3-4>와 같다.<sup>80)</sup>

<그림 3-4> 수출입은행 수출용원자재 팩토링 이용절차



- ①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이 수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
- ②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이 공급계약을 이행
- ③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이 수출입은행에게 수출용원자재 외화매출채권매입을 신청하고 외화매출채권을 양도
- ④ 수출입은행은 외화매출채권 매입대금 지급
- ⑤ 수출입은행이 채권만기에 수출자로부터 외화매출채권대금 회수

80) 한국수출입은행, “알기 쉬운 수출용 수출용원자재공급 팩토링금융 이용안내”, 2006, p.5.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10개 기업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준 수출팩토링 총 금액은 1조 5911억원이었으며, 이중 81%인 1조 2883억원이 대기업에게 지원됐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것은 총액의 19%에 불과한 3028억원에 그쳤다. 2009년 8월까지의 수출팩토링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총 9194억원 중 대기업 7385억원(80%), 중소기업 1809억원(20%)으로 예년과 같은 대기업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 (2) 기업은행의 국제팩토링

기업은행 1989년에 FCI에 가입하여 국제팩토링 업무를 개시하였기 때문에 3개 은행 중 도입이 가장 빨랐다. 수출팩토링뿐만 아니라 수입팩토링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 및 신한은행의 수출팩토링과 차이가 있으며, 소구권이 있는 방식이라는 점과 제휴방식으로만 운영한다는 점에서 신한은행방식과 유사하다. 3개 은행 중 팩토링업무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역사에 비해 2005년 400억원 정도로 불과한 실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실적의 차별화를 통한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 (3) 신한은행의 수출팩토링

신한은행의 팩토링 금융상품은 소구권이 있는 방식이라는 점과 제휴방식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과 차이가 있다.

수출팩터는 외상매출채권의 추심전 매입을 통해 수출상에 대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매출채권의 양수 및 추심의뢰, 매출채권 구매자별 원장정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입팩터는 수입상에 대한 지급보증 및 팩토링 관련 매출대금의 추심 등을 제공하고 수입상의 지급불능 발생 시 신용승인 범위내에서 대신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2005년도에 FCI에 가입하여 수출팩토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2006년도에는 10억원 정도를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재 신한은행의 팩토링업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잠정적으로는 중지된 상태에 있

다. 다음 <표 3-9>는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의 팩토링서비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표 3-9> 한국 은행의 팩토링 서비스현황 비교

구 분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서비스 형태	수출팩토링, 수입팩토링	수출팩토링, 수입팩토링	수출팩토링
서비스 방식	직접방식, 제휴방식	제휴방식	제휴방식
대상 거래	사후송금 외상수출거래 D/A 거래 해외현지법인 경유 가능	좌동	좌동
대상 기업	동종품목 수출경험 1년 동일 해외수입자와 6월이상 수출기업	제한 없음 자체 심사기준에 따름	제한 없음 자체 심사기준에 따름
매입대금 지급	80-100% 선지급	100%선지급	80-100%
수수료	연Libor+0.5-1%	연Libor+0.1-2%	연Libor+0.5-1%
수출기업 책임	무소구조건, 담보 없음	소구조건, 담보 없음	소구조건, 담보 없음
가능국가	61개국	61개국	61개국
FCI기업	2005년 가입	1989년 가입	2005년 가입
이용 업체수	30개사	40개사	10개사
2009년 실적	1조3천억원	-	-

자료 : 한기문, 전계논문, p.67.



## 나. 한국 팩토링의 특징

한국의 은행들이 수출팩토링 금융을 제공할 때 수출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은행들은 수출상품의 경쟁력이나 기술력 등 수출이행능력이 있는 수출기업과 수출팩토링 거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후,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회계연도별 팩토링 한도 금액을 정하여 국제팩토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그러한 회계연도별 수출팩토링 계약 금액 한도내에서 수출업자의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 수출팩토링은 연도별 금액 한도 내에서 수출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건별로 양수되어 추심되기 때문에 건별국제팩토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은행들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할 때 수출자의 기업규모와 신용도 등, 그리고 수입국의 신용도, 수입업자의 기업규모와 신용도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팩토링 계약체결여부, 연도별 금액 한도 그리고 담보유무 등을 결정한다.

한편 한국 은행들이 취급하는 국제팩토링업무의 형태는 제한적 무소구조건 팩토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 커스토머와 수입국에 대하여 평가한 종합적 신용도가 높고, 그리고 금액이 적으면 무소구조건으로 국제팩토링 금융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구조건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무소구조건으로 한다고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국제팩토링 금융서비스는 무소구조건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처음에 소구조건으로 국제팩토링 계약을 한 후 수입자의 은행, 즉 수입팩토가 채권을 인수한다는 통지가 오면 무소구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 은행들에서 제공되는 수출팩토링은 팩토링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회피가 되지 않고,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sup>81)</sup>

81) 배정환,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으로서 국제팩토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제2집,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pp.121-123.

따라서 한국의 은행들은 수출자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할 때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을 조사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출자의 신용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팩토링은 외국의 수입자에게 채권양도가 통지되는 통지팩토링에 해당된다. 따라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시 수입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때 은행들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의 은행들의 수출팩토링에서 외상매출장부관리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컨설팅, 신용조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수출팩토링은 종합무역서비스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출팩토링 금융을 제공하는 한국 은행들은 매입대상의 채권에 대하여 기업별 또는 국가별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제한 없이 매출채권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팩토링을 제공한다. 그런데 시티은행은 팩토링 지원 가능한 국가 및 바이어별 등급을 내부문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수출팩토링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하는 수출계약의 결제조건은 주로 추심방식이나 Open Account 방식을 포함하는 사후송금방식이며, 매출채권의 결제기간은 보통 90일 정도로 최대 1년 미만의 매출채권인데, 예외도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채권의 건당 금액은 수출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내부승인권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은행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팩토링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은행들의 팩토링 수수료는 수출자의 신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은행별 실제 수수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사와 중소수출기업들이 고비용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움 상황을 고려하며 다른 무역금융과 비교하여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sup>82)</sup>

---

82)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거래에서 할인료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즉, 할인료: 연 Libor+0.50%-1.00%, 그리고 수출팩토링 수수료는 수출채권의 0.40%-0.8%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수출입은행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즉 1팩토시스템 거래에는 적용이 안 된다.

## 제4장 한국 팩토링의 문제점과 이용 증대방안

### 제1절 한국 팩토링제도의 문제점

#### 1.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가. 팩토링 관련 법제도의 미비

######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문제

현재 한국에는 팩토링에 대한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금융 관련 제도에는 정부의 명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그 정책 취지에 맞게 입법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분야의 순기능은 육성하고 역기능은 통제하고 있는데 팩토링인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왔다.<sup>83)</sup>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거래가 발생하는 팩토링은 현행 법률상 상충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법상 어음의 경우 어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폭넓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민법상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에 의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법적보호 장치밖에는 없다. 반면에 송장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

한편 팩토링 업무 중 할부채권 팩토링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종전의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 및 회수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동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팩토링 업무 중 할부채권 팩토링은 명백하게 신용카드업법상의 할부금융에 해당되어 인가받은 신용카드업자나 할부금융업자를 제외하고는 현행

83) 김영건, “국내 팩토링금융제도의 운용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0.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법을 흡수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sup>84)</sup>은 신용카드업만 허가제를 취하고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등록제를 택하되 동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권자인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무등록자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할부채권 팩토링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이 역시 입법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 (2) 세법상 팩토링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팩토링 거래 시 팩토링 금융에 의해 발생하는 팩토링 수입이자에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으로 보아 거래고객이 팩터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의 예외가 나열되어 있으나 대부분 금융기관에 대한 것으로 팩토링을 전문으로 하는 상법상 금융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팩토링 수입이자를 인식하는 경우 상법상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14%의 원천징수를 당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팩토링 전업사에게는 세무상 제재가 없으나 고객에게는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팩토링 거래에 따른 팩토링 수수료가 매출채권의 관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거래에 모두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금융회사의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팩토링을 금융이 아닌 포괄적인 매출채권 관리·용역으로 해석한다면, 그 대가로 주어지는 팩토링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84) 여신전문금융업법, (타)일부개정 2011.7.21, 법률 제10866호, 시행일 2012.7.22.

### (3) 매출채권의 복잡한 양도절차 문제

선진국의 경우 팩토링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매출채권이 송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채권의 양도, 매매, 담보제공을 위한 법적조치가 완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금융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납품증 또는 물품인수증이 일종의 증빙서류일 뿐 송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출채권은 어음의 형태로만 확정되어 불필요한 어음의 남발만 초래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어음채권은 그 양도가 매우 자유로운데 반해, 매출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450조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명채권의 양도절차를 따라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나. 현행법상 채권과 관련된 문제

### (1)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문제

한국 민법은 장래채권의<sup>85)</sup>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장래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채권의 특정가능성과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sup>86)</sup> 즉, 장래의 채권은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87)</sup>

---

85) 장래채권은 채권의 성립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아니하여 현재 채권으로서 성립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장래에 그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예방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는 조건부 채권과 순전히 가정적인 채권이다.

86)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1991.6.25. 선고 88다카 6358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7932판결, 대법원 1997.7.25. 선고 95다 2164판결, 대법원 2001.9.18. 고지 2000마5252결정 등.

87) 한기문, 전계논문, p.117.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장래채권에서 양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실무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즉,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는 기준은 장래채권양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모호하여, 채권이 장래에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그로 인한 위험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에게 맡겨 두더라도 충분할 것이다.<sup>88)</sup>

## (2)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문제

민법은 채권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sup>89)</sup> 이는 채권양도의 통지권자에서 양수인을 배제한 것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양도인이 비록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보통의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양도인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알게 되면 공급자인 자신의 채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채무자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 채무자는 공급자에게만 지급하려하여 제3자인 양수인의 개입을 꺼리기 때문이다.<sup>90)</sup> 결국, 팩터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는 적법한 양수인의 자격을 얻기가 어렵다.

한편 다산유동화법 제7조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는데,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채권양도 등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팩토링도 미래자산의 유동화로 볼 수 있는데 같은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면서 혼동되는 부분이다.<sup>91)</sup>

---

88) 대법원 판례 요건 두 가지 중 발생가능성 요건은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89) 민법 제450조 제1항.

90) 채무자는, 특히 자신이 경제적 강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양도로 인한 이중지급의무 리스크와 추가적인 채권관리의 번거로움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다.

91) 다른 면에서, 자산유동화의 한계중의 하나는 공시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 유동화계획 및 자산양도의 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기부등과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공시의 효과가 떨어지며 이중양도의 문제가

나아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성질을 가진 한국 민법은 앞서 제3장 제2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팩토링시 특히 한국 소재의 팩터가 수입팩터 역할을 하기로 했을 때 국제팩토링계약서상의 준거법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 (3)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

민법 제449조 제2항은<sup>92)</sup> 의사표시로 채권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 약정을 조사하게 하여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우리 판례를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약정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로운 채권양도를 방해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양도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이에 관해서는 채권양도에 관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90조가 적용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및 제3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첫째, 채권양도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에게의 통지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승낙을 요구하는 다항요건주의이고 둘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만으로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도 양도의 효력을 관철할 수 있는 선의보호주의이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다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어 채권의 선의취득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국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명채권양도의 <sup>93)</sup>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sup>94)</sup> 이러한 대항요건은 양수인이 채무

---

발생할 수 있다.

92)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3) 지명채권이란 보통의 채권 즉,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성을 가지고 있다.

94) 승낙의 법적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며,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 어느 누구라도 상관

자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타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는 달리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sup>95)</sup>

한편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채무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①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② 채무자의 승낙이다. 다만, 단순한 통지와 승낙만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면 제3자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선 사람들이 이상 존재하여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효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양도인이 매출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때 아무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납품과 양도승낙을 받는 사이에 동 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가압류가 행하여 질 수 있다. 즉,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추는 사이에 우선순위가 앞서는 권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양도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제3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없다, 또한 통지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하는 사전의 승낙도 유효하며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붙여서도 할 수 있다.

95) 대판 1965.11.16. 선고 65다 1720 판결.



## 2. 팩토링 운영상의 문제점

### 가. 팩토링의 변칙적 운용

1979년 아세아종합금융이 독자적으로 팩토링 업무를 시도하면서 한국에 팩토링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1980년 10월 당시 재무부(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활성화의 일환으로 “팩토링업무 운용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부터 정부 주도하게 본격적으로 종합금융회사들이 팩토링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후 투자금융회사, 시중은행, 신기술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으로 취급기관이 확대되었으며 팩토링 전업사의 출현으로 팩토링 취급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4년 말 팩토링 잔액이 9조원까지 확대되고 1997년에 30여개에 이르던 종합금융회사가 외환위기 이후 파산, 영업정지, 흡수합병 등으로 퇴출됨에 따라 팩토링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은행은 정부주도하에 어음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현금성 결제수단의<sup>96)</sup> 취급으로 팩토링업무를 도외시키고 있으며, 여신전문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확정채권에 한하여 팩토링업무를<sup>97)</sup> 취급하고 있다.

### 나. 전문수출팩터의 부족

한국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은행으로는 1989년 6년 처음으로 국제팩토링업무를 개시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의 팩토링은 2001년 외화여수신 규정이 폐지되기까지는 수입팩토링 위주로 운영되어 당시 수입자들은 원화보다 조달금리가 적게 드는 외화차입의 목적으로 팩토링을 이용하였다. 그러다가 외화여수신 규정이 폐지된

---

9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즉, 은행은 소구조건부 외상매출채권할인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무소구외상매출채권할인 즉, 팩토링을 하려하지 않는다.

97) 캐피탈회사의 팩토링거래 약정서에는 무소구외상매출채권할인을 선택적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는 어음+매출채권양도통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채무자가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때 공급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은행의 국제팩토링 실적은 저조하여 무역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sup>98)</sup> 그 후 2005년 4월 수출입은행 그리고 동년 11월에 신한은행이 국제팩토링 금융을 취급하게 됨으로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국제팩토링 영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의 국제팩토링 진출은 포페이팅의 성공적인 출범 뒤에 따른 수출기업의 수출금융지원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수출입은행이 이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자 신한은행도 같은 해에 수출팩토링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05년 이전에 극히 미미하였던 국제팩토링 실적이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후발주자로 뛰어 든 신한은행의 팩토링부문의 저실적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래 들어, 신한은행은 국제팩토링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sup>99)</sup>

전반적으로, 한국 금융기관들은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팩토링의 취급을 기피하여 전 세계적으로 팩토링 시장이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및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2008년 기준 한국의 팩토링 실적은 900만 유로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제팩토링은 국내금융기관으로는 수출입은행이 유일하게 그리고 몇몇 외국계은행이<sup>100)</sup> 팩토링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일괄팩토링이 아닌 비통지부송장 할인에 머물고 있으며 팩토링의 대상도 삼성, LG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의 중소기업을 위한 팩토링 서비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

98) 기업은행의 수입팩토링은 정식 수입팩터의 역할이 아닌 수입대금 용자로써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외화여수신규정폐지 이후 수출팩토링으로 업무를 전환하는 등 변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99) 신한은행은 해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자금운용을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같은 자금의 원천을 리스크가 덜한 일반 수출입금융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100) 주로 해외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진 은행들로서 HSBC Citi, ABN Amro, Deutsche Bank 등을 들 수 있다.

## 다. 팩터의 자체 신용조사능력 부족

팩토링은 거래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팩터에게 있어서 경쟁력은 이들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신용정보 체계이다. 한국에서 팩토링 업무를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팩토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법상 금융회사의 경우 전 산업분야에 대해 깊이가 없는 정보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팩토링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한국의 경우 신용평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sup>101)</sup>들이 있지만 이들도 신용정보의 한계로 모든 중소기업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Dun & Bradstreet(D&B)는 전 세계 40개국의 지사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 신용정보 회사이다. 이 회사는 160년 역사와 경험으로 전 세계 6,000만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업자료의 분석기법을 이용한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의 세계적인 표준을 확립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팩터가 팩토링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특정산업 분야와 항상 호흡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기법에 의한 신용조사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 및 팩토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팩터와 지속적인 정보교환으로 표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라. 채권회수능력 부족에 따른 인수 기피

본래의 팩토링은 외상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이 매입채권을 대가로 전도금융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함을 기본업무로 하는 단기금융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매출채권을 거래처로부터 양도승낙 시 민법상 지명채권의 까다로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

101)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대일통승와치신용평가)과 신용보증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신용정보제공업무를 하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고객에게 대부분 상환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고객은 팩토링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이라는 문제는 해결 되었지만 매출채권에 대한 위험부담은 그대로 남게 된다.

한국의 경우 팩터가 매출채권의 기일이 도래되어 판매자의 거래처에게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회수불능상태에 이를 경우 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팩터는 거래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매출채권을 자신의 책임 하에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책임을 거래기업에게 전가시키는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 거래에만 치중하게 된다.

이는 한국 팩토링이 매출채권관리라는 본래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금융업무와 차별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팩토링 업무가 발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되고 있다.

한편 비어음채권은 고객이 거래처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1개월~3개월 후에 어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팩토링을 취급하는 팩터에게 양도하고 전도금음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양도자인 고객은 양수자인 팩터는 계약서 등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처에게 양도승낙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거래처 입장에서는 복잡한 양도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부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팩터의 입장에서 비어음매출채권의 매입은 지명채권 양도의 까다로운 대항요건으로 인해 채권인수 자체의 법적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하게 된다. 그래서 어음의 양도는 어음법상 배서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팩토링은 어음채권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 **마. 팩터의 안정적 제원조달 수단 미비**

팩토링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팩터가 양질의 자금을 조성하여 좋은 조건으로 기업에게 금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과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특수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상법상 금융회사는 일반 법인으로 납입자본금도 영세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 발행도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팩터의 영세성은 자금조달 시 기존 금융권에 비해 불리하게 조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팩터들의 재원조달 수단의 미비는 고금리조달과 고금리대출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 3.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미비

#### 가. 중소기업의 활용저조

수출팩토링방식 수출입 거래 비중이 낮은 관계로 해외거래처의 이용회피 및 기존 관습적인 방식인 신용장 방식 및 송금방식을 이용하므로 수출팩토링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수출팩토링의 활용 저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특히 무역업계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수출팩토링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금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하겠다.<sup>102)</sup>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10개 기업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1>과 같이 2008년 기준 수출팩토링 총 금액은 1조 5,911억원이었으며, 이중 81%인 1조 2,883억원이 대기업에게 지원됐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것은 총액의 19%에 불과한 3,028억원에 그쳤다. 2009년 8월까지의 수출팩토링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총 9,194억원 중 대기업 7,385억원(80%), 중소기업 1,809억원(20%)으로 예년과 같은 대기업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 4-1> 연도별 수출팩토링 지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8월
대 기 업	9,854(77%)	12,883(81%)	7,385(80%)
중 소 기 업	2,869(23%)	3,028(19%)	1,809(20%)
합 계	12,723(100%)	15,911(100%)	9,194(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내부자료.

102) 박광서, 전계논문, pp.29-62.

## 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한계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Network-Loan 및 공공구매론은 어음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들로서 공급대금의 조기현금화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므로 공급자는 가맹점계약체결 및 금융비용의 부담 후 대금을 지급받는다라는 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자가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용자받으므로 차주가 구매자라는 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으므로 차주는 공급자이며, 금융비용도 공급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각 제도가 구별된다. Network-Loan은 공급대금의 조기현금화의 성격보다는 공급자가 납품 등에 필요한 자금이 활용토록 납품 전에 선지원하는 대출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제도로는 매출채권 그 자체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하며 차주가 공급자이고 금융비용도 공급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가 팩토링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매출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오직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매자가 만기 미결제시 공급자에게 행사하는 소구권으로<sup>103)</sup> 인하여, 실제 채무자인 구매자는 부도를 면하는 반면 공급자인 중소기업은 상환부담을 지고 연체이자(연 17%-19%)<sup>104)</sup>를 부담하며,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불량으로 등재되는 삼중고를 겪게 된다.<sup>105)</sup>

---

103) 이 제도는 대출 취급 후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되는 구조로 최근 경기악화 이후 구매자의 만기 미결제에 의한 공급기업의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104)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중소기업 멩는다」, 「매일이코노미」, 2009년 4월 15일.

105) 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문제점으로 31.8%가 우량 매출채권만을 담보로 인정함을 꼽았고, 그 다음이 배서양도불가, 어음보다 금융비용 증가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음에 비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대출이용을 위하여 전산을 갖추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이유로 대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 제2절 한국 팩토링제도의 이용증대 방안

### 1. 팩토링 관련 법제도의 정비

#### 가. 팩토링회사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팩토링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가 없는 현시점에서 이론적인 팩토링업무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영업하는 것이 팩터의 현실이고 보면 팩토링에 대한 관계법령의 제정과 정비가 팩토링 육성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법률과 팩토링 업무가 상충되는 점이 적지 않다. 우선, 할부채권 팩토링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할부금융과 상충여부의 문제이다.

그리고 세법상 문제도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세법상 팩토링 수입이자 소득의 원천징수와 수입수수료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는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다. 원천징수와 부가세의 과세취지를 고려할 때 팩토링 거래에 이를 부과할 마땅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세법상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원천징수의 본래의 취치가 불특정다수에 대한 이자소득세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자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주체로부터 징수하자는 조세징수의 편의성에 있다면, 팩토링 전업사(상법상 금융회사) 역시 여타 금융기관과 같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부분 중소기업인 고객의 원천징수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팩토링 전업사를 일괄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에 의한 면제대상 법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팩터는 자신의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나 부가세 과세거래로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교육세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조속한 세법정비가 선



행되어야 팩토링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팩토링은 매출채권의 양수도가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는 아주 복잡한 양도의 대항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매출채권 중 어음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비어음매출채권의 경우 아직까지 법적 보호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비어음매출채권의 법적 보호의 미흡은 팩토링거래가 어음할인업무에 치중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 나. 채권관련 법제도의 정비

장래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장래채권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개정시에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이나 UNCITRAL 국제채권양도협약처럼 장래채권을 양도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공급자의 현재와 미래의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팩토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 제5조 제a항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채권의 발생시에 그 채권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또는 장래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같은 맥락에서 UNCITRAL 국제채권양도협약은 장래채권의 양도나 채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바, 동 협약 제8조 제1항은 장래채권을 양도대상이라고 표시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계약 체결시에 양도대상인 채권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채권양도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동 협약 제8조 제2항은 다수의 장래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개별채권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운 이전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의 장래채권은 조건부채권과 순수하게 가정적인 채권을 포함한다.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의 문제나 양도승낙의 문제는 한국에서의 국내

팩토링은 물론 국제팩토링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바, 앞서 소개된 국제규범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법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하여도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이나 UNCITRAL 국제채권양도협약, PICC 등의 선진적인 국제규범은 금전채권의 국제적 양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바, 이러한 태도는 최소한 금전채권에 한정해서라도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팩토링 운영상의 합리화 추진

### 가. 특별법에 의한 팩토링 전문 금융회사 설립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팩토링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상법상 금융회사는 팩토링 금융의 양적인 면에서는 많은 부분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난립으로 질적인 면에서 팩토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금융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 중소기업의 유통금융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의 관행이 바뀐다 해도 그 체질변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어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팩토링 회사의 출현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존재였다. 그러나 상법상에 의한 설립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현재는 대부분시장에서 퇴출되어 기업에게 팩토링 지원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으로 FCI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300개, 유럽의 경우 592개, 전 세계적으로는 2,437개의 전문 팩토링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는 단지 2개의 팩토링 회사만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담보력이나 과거의 실적을 중시하는 은행과 달리 기업의 성장성이나 잠재성 등을 중시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하여 신용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팩터사간에 정보교환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통금융을 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자금지원과 각종서비스, 매출장부관리 대행, 외상매출채권 회수 대행, 보험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 팩토링 회사들의 역할은 첫째, 유망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구입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한다. 둘째,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요원을 바탕으로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매출장부 관리 및 회수기능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게 관리비와 인건비를 경감

시켜주며, 장부기장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매출장부관리를 대행해 줌으로써 기업이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 유통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팩토링 전문 금융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시장신뢰도를 위하여 이들의 설립요건은 과거에 상법상 금융회사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본금 규모, 감독기관의 통제 등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외국의 팩토링 전문회사처럼 강력한 신용능력을 바탕으로 유통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신용조사 및 채권회수 전문요원의 양성**

팩토링 회사가 고객과 팩토링 약정을 체결하고 팩토링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정확한 신용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팩토링 회사의 근본적인 기능은 거래처의 신용평가와 매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에 있으며,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팩토링 취급대상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재무 분석 능력을 함양하고 업계 동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팩터의 유래가 국제무역을 중개하던 대리상이 해당분야의 정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매출채권을 인수하고 금음을 제공하는데서 기인한 만큼 팩토링이 활성화 되려면 각 팩터들마다 전문적인 취급업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신용조사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차별적인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팩터 상호간에 신용조사정보를 교환하는 효율적인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신용조사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4개 기관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유료 정보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및 지명도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보가 매우 취약하다.

팩토링을 취급하는 한국 내 팩토링 회사들이 전문적인 신용조사 요원을 양성하여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상호교환 한다면 팩토링이 발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채권회수 업무의 전문화는 팩토링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팩터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채권회수 능력을 보유할 때 매출채권 매입에 있어 고객의 위험부담까지 인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채권회수 전문기관으로는 공기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은행에서 출자된 기은신용정보와 솔로몬신용정보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설립한 채권추심 회사들과 변호사들도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팩토링 회사의 주기능은 매출채권관리와 체계적인 채권회수업무에 있는바, 이 부문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거래기업들이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 **다.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에게 팩토링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팩토링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은행과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시장신뢰도가 우량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서 애로가 없다. 그러나 상법상에 의하여 설립된 팩토링 전업사는 자금의 조성에 있어 매우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반법인인 관계로 회사채의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4배로 국한되어있고 이마저도 시장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위한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보증을 받기도 매우 어렵다.

결국 고금리 자금조달·고금리 자금대여라는 악순환에 빠져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 팩토링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에게 고금리 자금을 부담시키는 결과 만 남게 된다.

팩토링의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팩토링 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취약한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금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팩토링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회사에서 실시하였던 표지팩토링 어음매출 제도를 허용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106)</sup> 또한 팩토링 채권만으로 운영되는 펀드를 조성하는 등 팩토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106) 투자금융회사가 할인,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근거로 금액, 만기 등에서 매출이 용이하도록 표준화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1992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따라서 표지팩토링어음은 어음을 할인하는 기업측에는 묶여있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매수자에게는 금액, 기간에 맞게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중개회사인 투자금융회사는 할인율과 팩토링어음 매출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중개이윤을 얻을 수 있다.

### 3.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확대

#### 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매출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구권 행사의 불안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팩토링은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서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회수의 리스크가 팩터에게 전가되어 공급자가 연체이자를 부담하거나 신용불량으로 등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공급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장부관리 및 추심을 대행하며, 매출채권에 대해 무소구 조건으로 선급금융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인 팩토링은 외상매출채권 대출제도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중소기업금융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시행중인 기업구매자금대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는 별도로 팩토링을 제도화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멕시코의 팩토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국내팩터를 포함시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리버스팩토링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멕시코의 팩토링 실적은 2003년 45억 2천 5백만 유로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현재 팩터수 11개, 국내팩토링실적 140억 유로, 국제팩토링 실적 3천1백만 유로로 멕시코의 총 팩토링 규모가 140억5천만 유로에 달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1934년 상업금융제공을 목표로 탄생한 멕시코의 국영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온라인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생산자체인이라고 불리는 Nafin 프로그램은 큰 규모의 신용도가 높은 지원기업에 속하는 구매자와 소규모의 리스크가 높고,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공급자를 사슬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Nafin은 신용도가 우수한 구매자와 그에게 공급하는 중소기업 등을 한 패키지로 하여 공급

자당 매출채권매입 한도를 정하고, 각공급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무소구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그 후 Nafin은 각 은행들에게 채권매입금액 만큼을 저리로 재할인하는 방법을 통해 팩토링을 촉진하였다. 한편, Nafin은 팩토링에 이용되는 전자적 플랫폼관련 비용과 모든 법적업무 관련 비용을 무수수료로 제공하였다.

Nafin 팩토링 프로그램은 각 당사자에게 이점을 주는데, 공급자에게 주는 이점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인 공급자의 신용위험이 우량기업인 구매자에게 전가되므로 기존의 신용정보에 관한 기록에 구매받지 않고 무소구조건으로 팩토링이 가능하다, 둘째, 유리한 금리로 운전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증가 없이 현금흐름이 원활해진다. 셋째, 대금 회수를 위하여 구매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음을 제시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하게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함으로써 매출채권관리를 아웃소싱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넷째, 팩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중은행들은 팩토링거래를 통해 공급자와 새로운 고객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에서는 팩토링거래의 99.6%가 Nafin을 이용하게 되었다.

상술하였듯이, Nafin이 제공하는 팩토링 프로그램은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에게 국책은행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성공적인 팩토링을 위하여서는 매출채권의 전자적 매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책중 하나로 총액한도대출을 들 수 있는데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므로, 한국은행이 팩토링 취급기관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므로, 한국은행이 팩토링 취급기관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팩토링 취급기관은 이를 중소기업인 공급자에게 팩토링 해주는 구조로 운영한다면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을 받는다면 팩토링 취급기관은 가산금리<sup>107)</sup>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므로 팩토링 취급기관의 수는 점진적으로

---

107) 현재 한국은행은 연금리 1.25%+a를 적용하고 있다.



확대될 수 있다.<sup>108)</sup>

## 나. 중소기업을 위한 무소구 팩토링 확대

수출금융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한도 대출에 포함하여 무역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금융은 국내 수출업체 및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지원하는 원화자금 대출제도이다. 그러나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대금결제가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선적 후에 대금회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결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적 후 대금회수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제도로 국제팩토링을 활용한다면 정부는 수출물품의 선적전 생산자금 및 원자재 구입자금에서부터 선적 후 물품대금의 조기회수까지 수출 전과정에 걸쳐 공급자의 자금필요시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수출금융지원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현재 국내유일의 국제팩토링 취급기관인 수출입은행<sup>109)</sup> 팩토링 대상기업 및 대상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멕시코의 Nafin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은행들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무소구부 국제팩토링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 첫째, 수출입은행은 해외 우량수입자를<sup>110)</sup> 꼭짓점으로 하여 공급사슬의 축에 있는 한국의 공급자를 선정한다. 둘째, 수출입은행은 각 우량 채무자별로 신용한도를 설정한다. 셋째, 수출입은행은 한국의 공급자들의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 파악하여 해당 주거래은행에게 한

108) 취급기관 수가 확대되면 각 취급기관별 금리는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되고, 중소기업은 팩토링 취급기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져 팩토링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자원제도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09)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무소구조건으로 팩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출입은행의 단독팩토링의 경우에는 해외 글로벌기업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제공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외국은행에서도 국제팩토링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수출실적이 높은 대기업과 송장할인에 그치고 있어서 무소구조건으로 할인금융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국제팩토링과는 그 괴리가 크다.

110) 해외의 대향 바이어들은 신용장대신 Open Account 결제방식의 Purchase Order를 선호한다. 따라서 신용장 기반의 금융을 사용했을 수출자들, 특히 아시아의 수출자들에게는 금융대안으로 팩토링이 적절하다.

공급자로부터 얼마까지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한도와 기간을 통보해 준다. 이때에는 수출입은행, 공급자 그리고 공급자의 주거래 은행을 3자로 하는 팩토링 업무계약서가 선행된다. 넷째, 각 주거래 은행은 주어진 한도 내에서 외상채권매입을 하고 매입한 금액만큼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좋은 금리로 재할인 받는다. 다섯째, 각 주거래 은행은 수입자로부터 만기시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수출입은행에 상환한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해외의 우량 수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무소구부 국제팩토링에 더하여 우량 등급이 아닌 일반 해외수입자를 채무자로 하는 팩토링 재할인을 수행할 수 있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중소기업은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각 수입자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받는다. 둘째, 각 시중은행은 매출채권을 할인한 다음 수출입은행에 재할인을 요청한다. 이 경우 국내은행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소구부 팩토링으로 진행할 것이지만, 수출보험공사가 해외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일반 수출채권할인 때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신용한도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시중은행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수출채권 매입액을 저리로 재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다. 중소기업의 동산·채권의 담보인정 확대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등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여신을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채권권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 금융기관이 선호하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은 자신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치 못하고 있다.<sup>111)</sup> 더군다나 신생기업의 대출 신청서, 금융권은 부동산 담보

---

111) 한국 기업의 동산담보대출은 0.05%에 불과하여, 이에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를 요구함에 따라 부동산이 없는 기업의 경우 생산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금융편의를 제공받도록 법제를 고려중인데, 다행히도 법무부는 원자재나 재고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2009년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0년 5월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그 동안의 금융기관은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위 법률안에 따르면 기업<sup>112)</sup> 등은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담보권을 등기할<sup>113)</sup> 수 있다. “다수”의 동산·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또는 채권도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무역업체들을 위하여서는 최근 정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동산 및 채권담보부 수출신용보증제도” 도입안을 발표한바 이것이 실현이 된다면 양호한 매출채권 같은 유동자산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금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라. 중소기업의 팩토링 인식 제고

팩토링은 주로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조달을 위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팩토링의 사용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팩토링의 효용성이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팩토링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인 1990년대 후 반에 사채업자를 비롯한 개인들이 팩토링회사를 난립하

---

112) 동산담보, 채권담보의 경우는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법인” 및 “상호등기를 한 자”로 제한하였다. 개인들도 누구나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채업자나 대부업자 등이 이를 악용하여 서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담보목적물의 부동산이 아니어서 유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하는 제3자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지는 등 거래의 안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지적재산권은 해당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권리자만 담보권설정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제한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113) 이러한 등기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제도가 신설된다고 하여 양도담보, 공장저당, 광업재단저당 등 기존의 담보권 제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병존하게 된다, 따라서 그 두 가지의 관계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였던 적이 있다. 이러한 팩토링회사들은 당시 상법에 의해 일반 법인으로 설립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일부 팩토링회사가 예금을 받는 가하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대해 지나친 금리를 적용시켜 문제가 심각하였다.<sup>114)</sup> 이처럼 팩토링은 선급금융 이외에도 신용조사, 채권추심, 장부관리 등의 종합적 선진금융기법임에도 불구하고 팩토링이 마치 사채업의 일종처럼 운용되어 팩토링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팩토링이 한국에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중소기업들은 팩토링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매우 부족하고 팩토링의 본질이 아직도 실무계에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들에게 팩토링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여<sup>115)</sup> 적극적으로 팩토링을 활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팩토링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중소기업에게 팩토링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므로 팩토링이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재고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측면으로서, 각 대학의 무역학과의 무역실무나 무역결제수업 때 팩토링의 효용을 가르치고 각 금융기관도 바로 팩토링실행을 못한다하더라도 외환연수교육시 이를 다루면 될 것이다. 한편, 무역영어검정시험과 국제무역사시험에 국제팩토링에 대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 다행스럽기는 하나, 실제로 진정한 팩토링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섭외측면으로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등 중소수출기업 유관기관들이 정부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팩토링이 실천되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114) 이소환, “팩토링에 관하여”, 「주간 금융동향 논단 모음집」, 한국금융연구원, 1998, p.303.

115) 홍보의 주체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무역연수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산하의 중소기업들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web을 통해 팩토링의 장점을 홍보하면 end user인 수출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팩토링을 주문할 것이고 금융기관은 팩토링을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갖출 것이다.

##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전통적인 신용장 방식과 병행하여 활용되는 국제팩토링거래방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국제팩토링 거래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국제간 거래에서 국제팩토링제도의 증대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팩토링의 개념과 기능, 종류 및 거래절차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UNIDROIT 국제팩토링협약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무역 결제방식의 변화추이와 최근 무역결제수단으로서 확대되고 있는 국제팩토링의 이용현황과 한국의 운영실적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FCI를 통해 이루어진 팩토링 거래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6천5백억유로로 2005년 대비 198.3%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FCI가 세계 팩토링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임을 감안하면 세계 팩토링 규모는 2조2천6백억 유로로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3조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지역이 약 1조유로 전체 이용실적의 58.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가 21.6%, 북남미가 11.2%, 호주가 2.8%, 아프리카가 1.0%의 순을 보이고 있다. 거래형태별로는 국내거래가 1조4천억유로로 85%, 국제거래가 2천4백5십억유로로 15%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거래의 이용 비율이 높은 구조를 나타내었다.

국가별로는 2010년 기준 GDP규모 대비 팩토링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21.0%를 차지하였으며, GDP 대비 팩토링 이용비율이 10%를 넘는 국가는 사이프러스(20.1%), 영국(13.6%), 아일랜드(13.2%), 포르투갈(12.2), 칠레(10.9%), 스페인(10.8%)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GDP대비 팩토링 이용 비중은 0.7%로 전체 FCI(Factors Chain International) 가맹국가중 39위로 나타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팩토링의 문제점을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 팩토링제도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현행 법률상 상충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세법상 팩토링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매출채권의 복잡한 양도절차 문제, 장래채권의 양도와 통지에 관한 문제 및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팩토링의 변칙적 운영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문수출팩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함과 동시에 팩터의 자체 신용조사능력 또한 부족하여 채권인수의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팩터의 안정적인 채원조달 수단 미비로 전문 팩토링 회사의 육성이 제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팩토링은 주로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조달을 위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10개 기업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 팩토링 이용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팩토링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이용증대 방안으로 팩토링회사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채권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한 팩토링 전문 금융회사 설립, 신용조사 및 채권회수 전문요원의 양성 및 채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팩토링 이용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특별프로그램 운영방안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소구 팩토링 확대방안, 중소기업의 동산·채권의 담보인정 확대 및 중소기업의 팩토링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한국 팩토링사의 내부 관행이나 중소기업의 팩토링 이용 애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추후 관련 연구에서는 팩토링 선진국의 도입과 활성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진행되어 실질적인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길원, 「팩토링금융제도연구」, 무역경영사, 1983.
- 강진석, 「무역실무론」, 청목출판사, 2001.
- 김영건, “국내 팩토링금융제도의 운용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인경, “한국수출기업에 있어 대금결제방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 김재형, “유엔 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 15집, 제1호, 한국국제거래법학회, 2006.
- 남풍우 “한국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사회과학논총」, 제 13집, 강남대학교, 2002.
- 박광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팩토링 활용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 박세훈, “수출대금결제에서 신용위험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팩토링 포페이팅 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박세훈·한기문, “국제팩토링계약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 박훤일, “팩토링의 법적 문제점”, 「한국금융법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08.
- 배정환,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으로서 국제팩토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제2집,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심상진, “한국의 국제팩토링제도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논문집」, 제38집, 제1호,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1996.
-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1999.

- 이소환, “팩토링에 관하여”, 「주간 금융동향 논단 모음집」, 한국금융연구원, 1998.
- 이소환·서근우, 「팩토링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8.
- 장경찬, “팩토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장동한·김병선, “무역대금 결제방식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상경연구」, 제26집, 제1호, 2001.
- 정봉진, “팩토링의 공시제도에 관한 미국 통일상법전 연구”, 「인권과 정의」, 통권364호, 2006.
- 정재곤, “국제팩토링 협약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2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1993.
- 정현우, “수출기업의 대금결제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 대금결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희철·정찬영, 「상법원론」, 박영사, 1993.
-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6판, 삼영사, 2008.
- 한국수출입은행, “알기 쉬운 수출용 수출용원자재공급 팩토링금융 이용안내”, 2006.
- 한기문, “국제팩토링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한주섭, 「최신 신용장론」, 동성사, 1994.
- 허은숙,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팩토링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제12집, 제1호, 한국아시아학회, 2009.
- 허은숙·구종순, “후불조건 수출금융방식으로서의 수출팩토링”,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 홍경은, “수출입대금결제방식의 변환에 따른 한국의 수출위험관리의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황기순,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상 결제위험 관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Diehl-Leistner, Barbara A., *Internationales Factoring*, Europäisches Wirtschaftsrecht, (Munich, Germany), Bd. 1, 1992.

Factors Chain International, *Annual Review 2011*, Drukkerij Mart. Spruijt bv, Amsterdam, NL.

Heller, Walter E. & Company, *Factoring Services*, 1982.

Klapper, Leora, "The Role of Factoring for Financ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ume 30, Issue 11, 2006.

Kramer, Roland L., *International Marketing*, 3rd Edition, Cincinnati, Ohio: South Western Publishing Co., 1970.

Ruddy, Noel, Simon Mills & Nigel Davidson, *Salinger on Factoring*, 4th ed., London: Sweet & Maxwell, 2006.

Salinger, Freddy R. and R. Bruce Wood, *Factoring: The Law and Practice of Invoice Finance*, London: Sweet & Maxwell Ltd., 1999.

Winship, P., *The Scope of the Vienn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ntracts*, published in Nina M. Galston & Hans Smit eds., *International Sal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tthew Bender, 1984.

志村和次郎, 「ファクタリングの實務」, 中央経済社, 2003.

<http://www.koreaexim.go.kr>.

[www.factors-chain.com](http://www.factors-chain.com)

[www.ifgroup.com](http://www.ifgroup.com)